2016년
일본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2016년
일본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들어가는 말

최근 각 국의 新보호무역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8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하며,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글로벌 경제리스크에 늘 주목해야만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하였고 이들 국가와의 무역비중은 68%에 달하는 등 전면적인 시장개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식품 수출은 공산품과는 달리 수입국의 국민건강과 직결되므로 통관·검역 및 위생허가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유통구조와 높은 물류비용 등 극복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약 6% 증가한 65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수출확대와 수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각종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담아 「일본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해외진출과 시장개척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수시로 수출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최신 개정사항은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사이트인 www.kati.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목 차

2016년 일본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제1장 시장개요 ····· 1
제1절 대일 수출실적 ····· 1
제2절 시장여건 ····· 2
제3절 소비트렌드 ····· 3
제4절 유통 및 소비현황 ····· 4

제2장 통관 및 관세제도 ····· 5
제1절 통관제도 일반 ····· 5
제2절 수입통관 절차 ····· 6
제3절 세관 수입통관 간소화 관련 제도 ····· 12
제4절 관세제도 ····· 14

제3장 검역제도 ····· 15
제1절 검역제도 일반 ····· 17
제2절 동물검역 ····· 17
제3절 식물검역 ····· 19
제4절 식품검역 ····· 21
제5절 품목별 검역 유의사항 ····· 26

제4장 라벨링 제도 ····· 38
제1절 식품표시제도 일원화 ····· 38
제2절 공통 품질 표시기준 ····· 39
제3절 유기JAS 제도 ····· 41
제4절 알레르기 표시 ····· 43
제5절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 45
제6절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 47
제7절 식품첨가물 표시 ····· 49
제8절 보건기능식품 표시 ····· 51
제9절 개별 가공식품의 품질표시 기준 ····· 59

제6장 2016년 주요 변경사항 ····· 60
제1절 일본 고추(고춧가루 포함) 잔류농약 기준치 완화 개정 ···· 60
제2절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가이드라인 변경 ····· 61
제3절 유제품 및 식품첨가물 규격기준 개정 ····· 62
제4절 수입식품 글루텐프리 제품의 표시 감시강화 ····· 64
제5절 일본 농림수산성 병원식 JAS규격 신규 제정 ····· 65
제6절 대일 수출 참외 전수검사 명령 ····· 66
제7절 대일수출 가능 육류 열처리 가열육 승인업체 리스트 ····· 67

제7장 통관문제사례 및 대응방안 ····· 68
제1절 통관문제사례 동향 ····· 68
제2절 통관문제 사유분석 ····· 71
제3절 대응방안 ····· 72
제4절 2016 통관문제사례 목록 ····· 75
제5절 참고자료 ····· 77

제8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 80
제1절 수출애로 해소사례(aT지원) ····· 80
제2절 수출애로 및 건의사항 ····· 83
제3절 aT 현지화 지원사업 안내 ····· 84

제 1 장 시장개요

제 1 절 대일 수출실적

1. 한국 농식품 수출입 실적

(단위 : 톤, 천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 출	937,628	1,316,313	868,844	1,167,516	822,278	1,158,746
수 입	689,499	481,723	702,474	500,242	597,879	532,385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AG코드 기준), 수산물 제외

2. 최근 3개년 수출 상위 5품목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위	기타곡물발효주	142,016	궐련	133,826	궐련	142,753
2 위	혼합조제식료품	119,253	기타곡물발효주	119,112	혼합조제식료품	125,581
3 위	기타설탕과자	93,808	혼합조제식료품	109,429	기타곡물발효주	103,481
4 위	대두박	90,854	파프리카	85,012	파프리카	93,327
5 위	파프리카	79,528	기타설탕과자	67,635	기타설탕과자	62,905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AG코드 기준), 수산물 제외

제2절

시장여건

1. 일본 정부, 공격적인 농림수산업으로의 전환 추진

❖ 2020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액 1조엔 조기달성 목표 수립

❖ 젊고 전문적인 농업종사자 육성, 산지혁신, 축산·낙농업 수익강화, 수출시장 개척 등 신수요 발굴, 규제개혁 및 세재개편 등 추진

2. 소비세 인상안 연기, 주류를 제외한 식료품 소비세 8% 유지

❖ 일본정부는 당초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키로 하였으나, 국내 소비둔화를 염려하여 두 차례 인상을 연기하여 2019년 10월까지 소비세 인상을 유보

❖ 소비세 인상 이후에도 주류를 제외한 식료품의 소비세는 8%를 유지하기로 결정

3. 일본 소비경제 완만한 회복 기조

❖ 일본 엔저정책과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장기간 침체에 빠졌던 일본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

4. 정치적, 역사적 갈등으로 인한 일본 유통업체의 한국식품 취급의욕 위축

❖ 한류 붐에 힘입어 한국음식 및 한국산 식품의 기본수요 정착되었으나 최근 정치적, 역사적 문제로 인해 일본 주요 유통업체에서 한국 농식품 취급에 소극적

5. 한국풍 식품의 일본내 제조 확대

❖ 고추장, 비빔밥, 잡채, 불고기소스, 김치찌개 소스, 삼계탕 등 한국풍 식품의 일본 내 제조 및 판매가 확대되어 위협요인으로 작용

제3절

소비트렌드

1.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 2015년 4월 식품표시법 시행으로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반영한 제품이 대형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판매

❖ 건강기능성 신선채소를 비롯하여 라면, 스프 등 가공식품 시장까지 건강기능성 식품 출시가 활발해졌으며 관련 농식품 매출 또한 상승세

2. 쁘띠제이타쿠 소비성향 확산

❖ 쁘티제이타쿠는 작다는 의미의 프랑스어 '쁘띠(Petit)'와 사치라는 뜻의 일본어 '제이타쿠'가 결합된 단어로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사치를 누리고자 하는 소비성향을 의미

❖ 식품업계에서도 기존 상품을 고급화하고 단가를 높여 판매하는 프리미엄 전략이 확산

3. 간편요리 시장 지속적 확대

❖ 노인인구 증가, 1인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일본 식품시장에서 간편요리의 인기가 높아짐

❖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손질된 식재료와 레시피를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요리키트 상품 시장도 주목

4. 저가격과 고가격 상품의 이원화 현상 뚜렷

❖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대기업 중심의 임금인상으로 가계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엔저현상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우 저가물건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일부 유통업체 및 외식업체의 경우 저가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제4절

유통 및 소비현황

1. 유통채널별 매출액

(단위 : 억 엔)

구 분	2013	2014	2015
슈퍼마켓	132,508	132,931	131,477
편의점	100,178	105,446	111,279
백화점	68,930	67,021	67,923

출처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를 토대로 야노경제연구소 작성

2. 주요 식품 유통매장

(단위 : 개소)

분류	업체명	매장수	위치
대형마켓	AEON Retail	563	치바
	Seven & I Holdings	181	도쿄
	Uny	226	나고야
	Daiei	468	도쿄
	Izumi	103	히로시마
편의점	Seven & I Holdings	17,491	전국
	Lawson	11,900	전국
	Family Mart	10,514	전국
	Circle K Sunkus	5,990	전국
	Mini Stop	2,151	전국
	Three-F	558	도쿄
	Poplar	525	전국
백화점	Mitsukoshi-Isetan	-	도쿄
	J.Front Retailing	-	도쿄
	Takashimaya Co.	-	오사카
	Seven&I(Sogo Seibu)	-	도쿄
	H2O Retailing	-	오사카

출처 : Tokei Geppou May 2015

3. 최근 3개년 식품·음료 소비금액

(단위 : 억엔)

구 분	2013	2014	2015
식품·음료	455,900	453,110	443,890

출처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산업별 매출액 기준(식품, 음료 소매기준)

제 2 장 통관 및 관세제도

제 1 절 통관제도 일반

❖ 통관이란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가 세관에 화물의 품명, 종류, 수량,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와 같은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입 허가를 받는 절차를 말함

❖ 수출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출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출의 경우 내국화물에서 외국화물로 변환되지 않아 선적을 할 수 없음. 또한 수입의 경우 외국화물에서 내국화물로 변환되지 않으며 보세지역으로부터 국내 인수가 불가능.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이 절차를 게을리하거나 허위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수출입을 한 경우는 밀수에 해당함

❖ 통관절차는 관세법, NACCS법(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통관업법(통관업체에 대한 규제 및 운영)에 따라 규정되고 있음

❖ 수출입 신고는 수출입을 하려고 하는 자(개인 혹은 기업 및 단체)가 직접 또는 통업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음. 다만 세관에 수출입 신고 시, 통관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에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관세사만이 할 수 있음

제2절

수입통관 절차

❖ 외국에서 도착한 화물을 일본에 인수(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그 화물을 보세지역에 반입한 후에 그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화물에 대한 필요한 심사, 검사를 거쳐 관세, 내국 소비세 등을 납부해야함

▌수입통관 절차▐

출처 : 한국 관세청(www.customs.go.kr), 일본 관세청(www.customs.go.jp)

▌수출절차별 유의사항▐

수출절차	유의사항
사전보고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24시간 전에 일본 수출입항만정보처리시스템(NACCS)에 화물적재 정보를 보고해야 함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NACCS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관할 세관에 직접 증빙서류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통관대리인을 통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통관대리인은 반드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일본이어야 함
타 법령 검토	일본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법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승인내용에 대해 입증할 의무가 있음
심사 및 검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검사 여부가 달라지며, 검사 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자 혹은 화주가 전액부담
관세 납부	별도로 정해진 납세기한은 없으며 서류의 심사와 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납부가능
화물 반출	제출서류의 하자가 없고 관세 및 세금의 납부가 완료되는 경우 세관은 수입허가증을 발행

출처 : 한국 관세청(www.customs.go.kr), 일본 관세청(www.customs.go.jp)

1. 사전보고 및 적하정보 제출

❖ 일본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근거리의 경우 출항 전)까지 '일본 수출입항만관련정보처리시스템(NACCS)'을 통해 보고해야함(KTNET, KLNET을 통해 경유하여 접속가능)

- 화물적재 정보는 필수 보고 내용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

2. 수입신고

❖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였다는 도착통지가 내려진 경우, 수입자 혹은 화주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 함. 수입신고는 통관 대리업자를 통해 신고 가능

❖ 수입신고는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필요한 입증서류[1]를 첨부하여 검역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NACCS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후생노동성에 등록 필요

❖ 최초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검역소는 통상 제조자가 작성한 '원재료 성분표' 및 '제조공정설명서', 제품의 용도, 사용법, 주의사항, 제조자, 제조공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를 요구하고, 품목에 따라서는 '유전자변형식품 검사증명서','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등도 요구

따라서 수출자는 선적하기 전에 수입자 및 해당 검역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서류를 준비해야 통관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음

1)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 수입신고서, 매입서(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보험료명세서(Insurance Certificates), 운임 명세서(Freight Accounts),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특혜원산지 증명서(해당할 경우), 감면세 명세서(해당할 경우) 등

▌식품 등 수입신고서 ▐

신고접수번호	**※1**	성명(1) (印)	
신고 종류	**(2) 사전 · 계획수입**	주소	
수입코드	(3)	(전화번호)	
생산국·코드	(5)	수입식품위생관리자등록번호	(4)
제조자명, 주소·코드	(6)		
제조장소명, 주소·코드	(7)		
수출자명, 주소·코드	(8)		
포장자명, 주소·코드	(9)		
적재항·코드	(10)	적재년월일	(11) 년 월 일
하역항·코드	(12)	도착년월일	(13) 년 월 일
보관창고·코드	(14)	반입년월일	(15) 년 월 일
		신고년월일	(18) 년 월 일
화물 기호 및 번호	(16)	사고 유무 (있는 경우 그 개요)	(19) 무 · 유
선박/항공기의 명칭 및 편명	(17)	제출자·코드	(20)

1 화물별	(21)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장난감	계속	(22) Y·N	위생증명서번호	(32)
품목 코드	(23)			화물이 가공식품일 경우 원재료·코드화물이 기구, 용기포장 또는 장남감일 경우 그 재질 · 코드	(33)
품명	(24)				
적재수량	(25)				
적재중량	(26) kg				
용도 코드	(27)			화물이 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의 경우 해당 참가물의 품명·코드 화물이 첨가물제제의 경우 그 성분·코드 (양쪽 다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제외)	(34) ※2 ※2
포장종류 코드	(28)				
등록번호 1	(29)				
등록번호 2	(30)				
등록번호 3	(31)				
화물이 가공품일 경우 제조 및 가공방법 코드	(35)				
비 고				신고필 인	

<주의>

※ 1란은 기입하지 마세요.

※ 2란은 화물이 식품일 경우 첨가물의 품명은 일반적으로 식품으로서 음식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은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에 한하고, 화물이 첨가물제재의 경우의 성분은 일반적으로 식품으로서 음식에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합니다.

※ 수입자의 기명 날인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식품 등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대상 식품 등	첨부서류
가축 등(소, 말, 돼지, 면양, 산양, 수소)의 고기와 장기 및 이것을 원료로 한 식육제품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
콜레라 오염지역에서의 생선어패류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
복어	수출국 공적기관의 위생증명서
대형 낙화생	수출국 정부/공적검사기관의 위생증명서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가공식품 중 처음으로 수입되는 것	지정검사기관의 자율검사 성적서 상품설명서*
동일식품 등의 계속 수입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지정검사기관의 자율검사 성적서 또는 행정검사 합격 시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시안화합물 함유 잡두	서약서, 시안 함유 검사성적서
타르 색소	제품 검사 서약서
표시가 필요한 식품, 첨가물	표시설명서 또는 표시의 내용
곡물류, 향신료 등 아플라톡신 검사	모든 곡물류 및 향신료, 향신료가 일정량 이상 포함된 가공식품의 경우 수입 시 아플라톡신 검사가 필요함

3. 타 법령 검토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법 외에 다른 법령[2]에 의해서 허가 및 승인이 필요할 경우, 수입신고 시에 해당 물품이 허가 및 승인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함

2) 타 법령 규제 대상에 대해서는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URL : 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801_jr.htm

4. 심사 및 검사

❖ 수입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검역소는 앞에서 설명한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주로 아래 항목별로 위생 상 문제가 없는지 또는 시험성적 검사가 필요한지를 심사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첨가물의 사용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 유독 유해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과거 위생상 문제가 있는 제조자·제조장소 여부
- 처음 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
- 운송 도중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여부

❖ 시험성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역소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검역소에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 컨테이너 규모의 대량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소량의 샘플 수출을 통해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본선 컨테이너로 수출을 하는 것이 안전함

❖ 검사해야 할 항목은 사전에 검역소에 성분표와 제조공정표 제출을 통해 이메일 또는 직접 상담에 의해 판정받을 수 있으며,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한국 내 지정 검사기관이 있으므로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시간절약과 경비를 절감하는 유효한 방법임

❖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되,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

❖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통관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5. 관세납부와 수입허가

❖ 납세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된 기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 세관에서 서류 및 검사가 완료된 후에 바로 납부서 교부가 가능함.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없음

❖ 관세나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세관은 즉시 수입을 허가하게 되며, 수입자 또는 화주에게 수입허가증을 발행함

제3절

세관 수입통관 간소화 관련 제도

1. 특례 수입신고제도

❖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자가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지정받은 화물에 대해서는 법령 준수의무를 조건으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해 먼저 화물 수령신고를 하고 그 후 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2. 예비심사제

❖ 수입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예비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사전에 세관 서류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수입화물이 보세 지역에 반입된 후 본 신고(수입신고)의 의사 표시를 하면 즉시 허용

❖ 신선식료품과 저스트 인 타임으로 납기가 까다로운 상품, 특정 계절이나 이벤트(크리스마스 등)를 위한 상품 등 수입화물의 인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많이 쓰임

3. 화물 도착 즉시 수입허가제도

❖ 수입 시 예비 신고가 있었던 화물 중 국내 인수를 서두르는 화물의 경우 세관 서류 심사 결과 '검사 불필요'라고 표시된 화물은 도착이 확인되는대로 수입신고를 실시하면 보세지역에 반입하지 않고 즉시 수입허가가 이루어지는 제도

4. 수출입항만관련 정보처리시스템

(NACCS : 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 일본 대부분의 통관업자는 NACCS를 사용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부터는 관련 서류를 PDF 등의 전자매체로 제출 가능

5. 우수공인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제조업체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NACCS이용,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

❖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

❖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AEO 대상으로 화물도착 전 신고, 납세신고 전 화물인수 및 사후납세, 보세지역 반입전 수출신고, 신고에 의한 보세장치장 설치, 법규 준수도에 의한 심사 및 검사비율 경감 혜택 부여[3]

▌AEO 혜택▐

제도	대상 사업자	제도 개요
특수수입 신고제도	일본 수입자	화물의 도착 전에 신고 및 허가 가능 납세신고 전에 화물의 거래 가능
특수수출 신고제도	일본 수입자	화물이 보세지역 밖에 있어도 수출신고를 실시하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음
특정보세 승인제도	창고업자	보세 장치장의 신규 설치, 허가수수료 면제 등
인정통관 사업자제도	통관업자	대리로 실시하는 수출입 통관에 있어 통관 수속 간소화
특정보세 운송제도	운송자 등	간단한 수속을 통해 외국 화물 운송 가능
인정제조자 제도	제조자	보세 지역 밖에 있는 화물에 대해서도 수출신고 가능

※ 한국-일본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4] 체결

3) 관세청 AEO 제도 소개자료 참조

4)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혜택을 부여토록 하는 약정

제4절

관세제도

❖ 일본의 관세제도[5]는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관세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일반특혜세율, LDC특혜세율 등으로 분류

- 기본세율 : 자국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
- 잠정세율 : 기본세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며 관세잠정조치법에 의해 운영
- 일반특혜세율 : 일본이 인정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게, 일본이 인정한 후발 개발도상국의 경우 무관세 적용
- 특별특혜세율(LDC[6]특혜세율) : 일본이 인정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실행세율(기본세율과 협정세율 중 더 낮은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 HS코드에 따른 일본 관세율표[7]는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

5) 일본 관세관련 법률 원문조회 :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jp)
※ URL : http://www.customs.go.jp/kaisei/hourei.htm
6) LDC : 개발도상국(Less Developed Country) 또는 최빈개발도상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의미
7) 일본 관세율 조회 :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jp) 輸入統計品目表 (実行関税率表)
※ URL : http://www.customs.go.jp/tariff/index.htm

제 3 장 검역제도

제 1 절 검역제도 일반

❖ 사람 및 가축의 생명 또는 건강과 관련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엄격한 규제가 시행

❖ 동물은 가축전염예방법, 광견병 및 수산자원보호법, 식물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을 받아야 함

❖ 동·식물 중에서 식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동식물 검역을 받은 후 다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동·식품 또는 식품은 최초 수입 시 매우 엄중한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소요기간을 충분히 잡아야 하고,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는 아예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계당국에 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동·식물, 식품 등 검역절차 개요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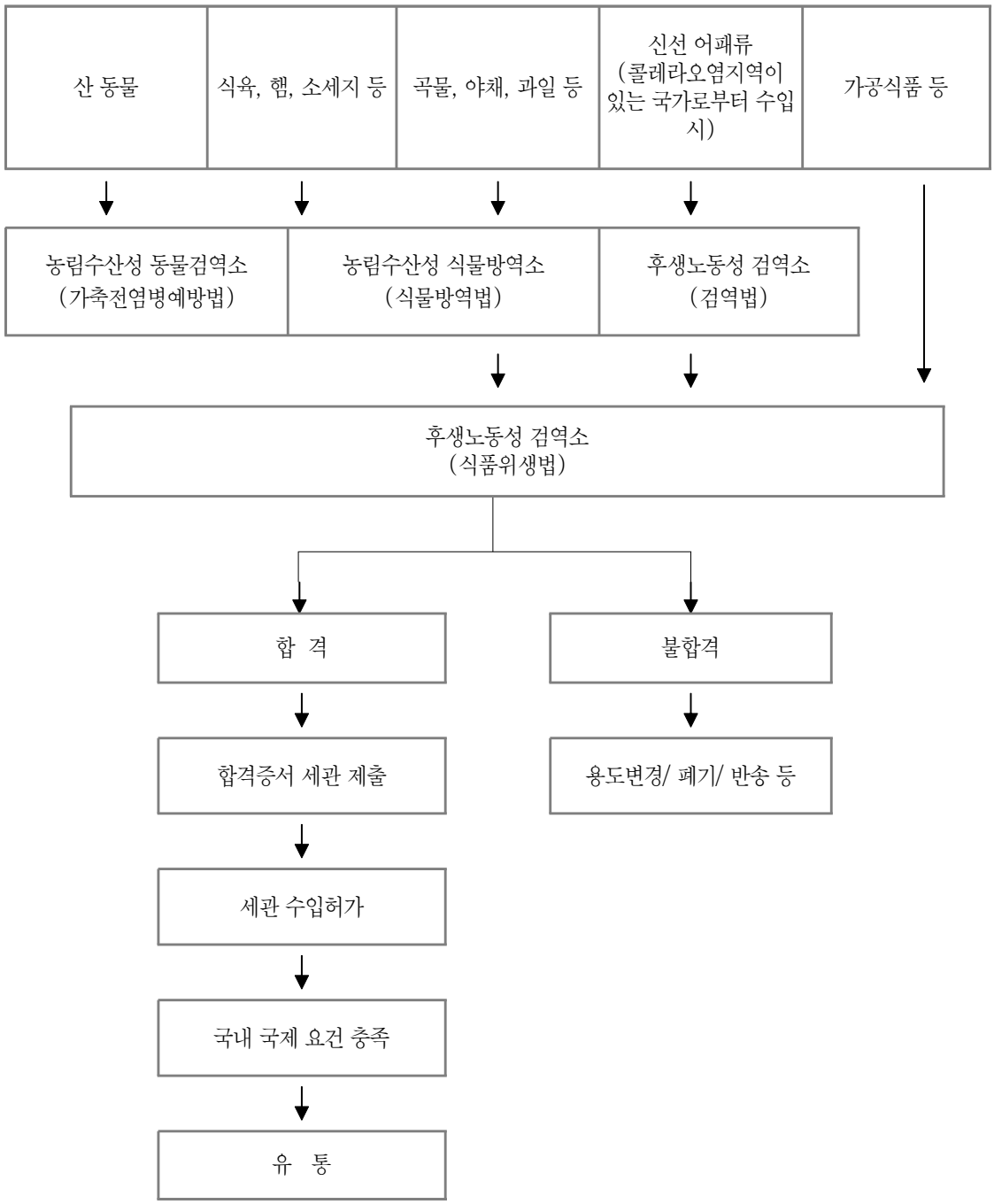

제2절

동물검역

❖ 「가축전염병예방법(家畜伝染病予防法)」에서는 가축 전염병의 국내 침입 방지를 위하여 수입물품 중 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지정검역물)을 지정

- 이들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의 검사를 받아 수입검역증을 취득하거나 농림수산성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정검역물 ▐

1. 다음의 동물 및 그 사체
   ○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偶蹄類**) 동물 및 말
   ○ 닭, 메추라기, 꿩, 타조, 색시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타 오리류
   ○ 개, 토끼, 꿀벌
2. 알(닭, 메추라기, 꿩, 타조, 색시닭, 칠면조, 오리류의 것)
3. 위 1. 동물의 뼈, 고기, 지방, 혈액, 피부, 머리, 날개, 뿔, 발굽, 힘줄 및 장기
4. 위 1. 동물의 우유, 정액, 수정란, 미수정란, 분뇨
5. 위 1. 동물의 뼈가루, 고기가루, 혈분, 피부가루, 날개가루, 발굽가루 및 내장가루
6. 위 3.을 원료로 하는 소시지, 햄, 베이컨
7. 수입 허용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료용 짚 또는 건초
8.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 시험연구용 등으로 농림수산성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물품

❖ 지정검역물의 경우 일반화물, 휴대품, 국제우편물 등의 운송형태, 양의 다소, 용도(기념품, 자가 소비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동물검역을 받아야 함

❖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의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지역 및 품목을 지정

❖ 우리나라는 현재 구제역 발생국으로 인해 소, 돼지 등의 우제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열처리 사전 승인공장에 한해 대일수출이 가능

❖ 검역절차

- 동물검역 신청 시 '수입검사 신청서'와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Health Certification)'를 첨부하여 동물검역소에 제출

- 동·식물의 검역은 원칙적으로 이중 검역제로서 출발국의 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도착국에서 검역을 받아야함. 따라서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를 취득해 두는 것이 중요
- 동물검역소 검사 결과에 따라 교부받은 수입 검역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 또는 허가를 받았다는 확인 후 통관 가능
- 세관은 우편물 또는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동물검역 합격여부는 용기, 포장에 날인된 '검역필' 도장을 보고 확인
- 동물, 육류 등은 수입이 금지 또는 정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정검역물이 아니라도 감시 대상 전염병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하거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및 동물검역소에 확인 필요

▌동물 검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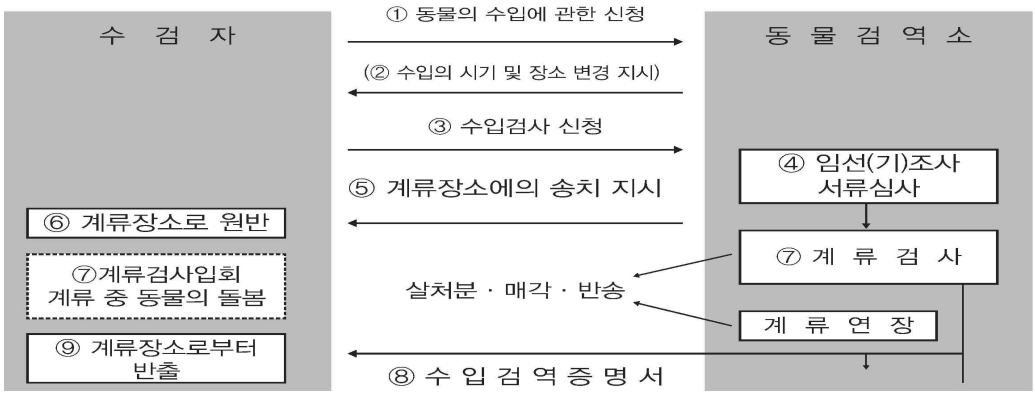

▌축산물 검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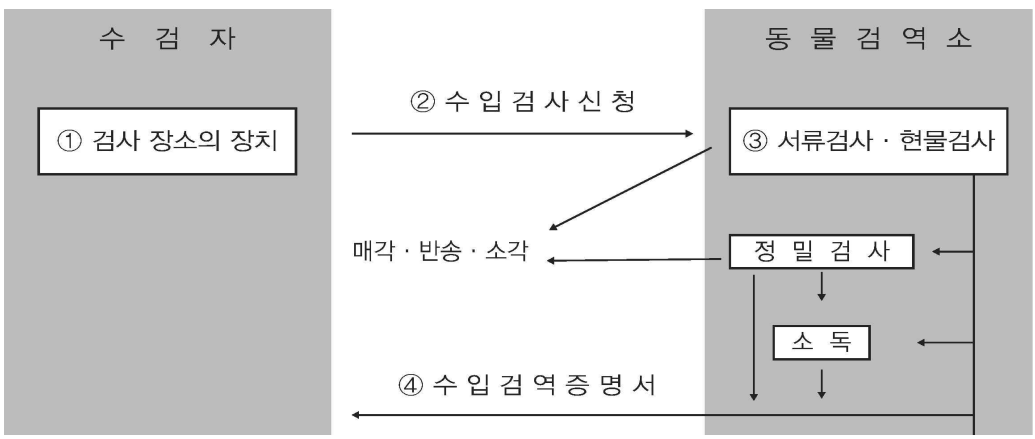

제3절

식물검역

❖ 「식물방역법(植物防疫法)」은 병충해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품목, 검사대상 품목, 검사제외 품목으로 구분 관리

<수입 금지 식물류>

○ 피해가 큰 병충해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그 병충해의 기생식물 및 병해충, 흙 또는 흙이 묻은 식물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같은 식물이라도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수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지역에서 야생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기도 함
- 금지품이라도 시험·연구·전시용의 경우 농림수산성의 허가를 받고 수입가능

<식물방역 검사대상 식물류>

○ 야채, 과실, 곡류, 콩류, 건조목초, 절화, 관상용식물, 종자, 묘목, 구근, 관상용 식물, 목재(**製木** 제외), 향신료, 한방약원료, 목제포장재 등은 검사 후 수입 가능

<식물방역 검사제외 식물류>

○ 식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검사 대상이 되나, 가구와 같이 제품화된 것, 차와 같이 고도로 가공된 것, 병해충에 의한 오염 우려가 없도록 병 또는 캔 등에 밀봉된 향신료, 식품 등은 식물방역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목재, 방부 목재, 목공품, 대나무가공품 및 가구 집기, 등나무 및 코르크, 마대, 면, 제차, 건조죽순, 살구, 무화과, 감 등의 건조 과일 등

❖ 검사대상 물품은 일반화물, 휴대품, 국제우편물 등의 운송 형태, 중량, 용도(기념품, 자가소비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검역대상임

❖ 식물검역 절차

- 검사대상 식물류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검사신청서와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식물방역소에 제출해야함
- 방역소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식물검사 합격증명서', '식물 수입허가 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세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통관
- 세관은 우편물 또는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식물검역 합격여부는 용기, 포장에 날인된 '식물검사합격증인' 도장 등을 보고 확인

- 식물은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지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기도 하고, 가공품이라 하더라도 검사대상이 되는 것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의2「재배지 검사를 필요로 하는 식물 등」, 동 별표2「수입금지 지역, 식물 및 검역 유해동식물」을 검토하고,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및 식물방역소에 확인

▌식물 검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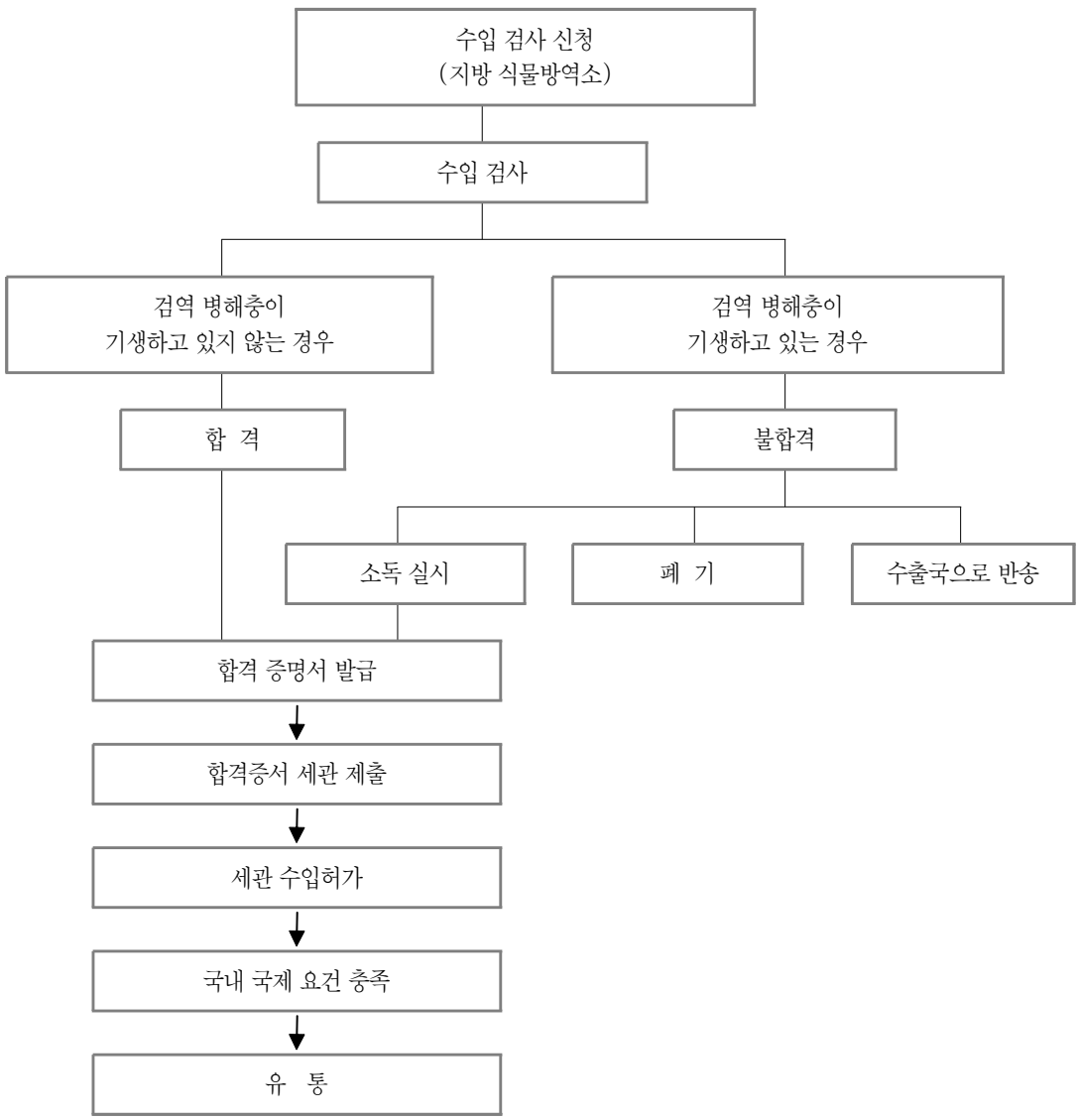

제4절

식품검역

1. 식품위생법 개요

❖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 음식으로 인한 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제1조)

❖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위생적인 식품, 후생노동성대신이 정한 ⅰ)제조·사용 기준 ⅱ) 성분 규격 ⅲ)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ⅳ)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등은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제6조,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 수입자에게는 매 수입 시마다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제27조), 필요한 경우 검역소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판매 허용(제25조 내지 제26조)

2. 식품검역 대상물품

❖ 수입식품 신고 대상은 판매용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포장용품이며 이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나 개인이 자가용으로 사용할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음(이상 법제4조)

❖ 이 외에 영유아용 장난감이 그 대상이 되므로 영유아용이 아닌 일반 장난감은 수입식품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가능(법 제62조)

가. 식품

❖ 식품위생법에 말하는 식품은 가공하지 않은 신선 동물성·식물성 식품부터 가공식품까지 모든 음식물을 의미하며, 기호식품, 건강식품, 알콜음료(주류) 등도 포함

❖ 다만 원염·코프라(코코넛 과육을 말린 것), 식용유 원료 유지, 조당(정제하지 않은 설탕), 조류 알코올(증류주의 원료), 당밀, 채종, 맥아, 호프는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의해 규제

나.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과정 또는 식품가공이나 보존을 위하여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질

❖ 식품첨가물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솔빈산, 안식향산, 타르색소 등의 규격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존 식품첨가물 목록(1996년, 후생성 고시 제120호)에 등재된 천연첨가물(치자황색소, 감탄닌 등의 천연첨가물), 그 자체로도 음식이며 일반적인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첨가물(딸기 주스, 녹차 등의 첨가물)이 포함

다. 식품기구

❖ 식품기구란 식기, 요리기구, 기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집,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수수 또는 섭취용으로 사용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 하는 기계, 기구, 기타 물건을 말함

❖ ①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용/가공용 기계나 기구 등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물건과 ②조리에 사용하는 식칼, 도마, 식품 저장용 냉장고, 냉동고, 식품 운반기구, 젓가락, 접시를 비롯한 식기 등 식품 채집 및 제조에서 섭취에 이르기까지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모든 기계, 기구를 의미

❖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괭이, 어망 등의 기계, 기구 등은 미포함

라. 식품포장용품

❖ 식품포장용품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판매할 때 사용하는 병, 캔, 합성수지제 등의 포장용기도 포함

3. 식품검역 절차

❖ 수입신고 시 검역소는 서류심사, 물품검사 절차를 거쳐 적합여부 판정

❖ 적합판정을 한 경우 검역소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하며, 수입자는 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용도를 바꾸어 다른 용도로 통관하는 방법, 재가공 등을 거쳐 다시 적합성을 판정 받는 방법, 폐기처분하는 방법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시키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

4. 일본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제도[8)]

❖ 일본후생성은 수입절차의 간소화를 꾀하는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수출국 공적검사기관[9)]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인정

❖ 수출업체가 한국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 일본 수입검역 단계에서 동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여 별도의 검사없이 통관 가능

❖ 한국 내 사전검사를 통해 통관거부사례 발생 감소, 신속한 통관 및 검사비용 절감

가. 사전확인 신청절차

❖ 수출식품 제조자 '사전확인 신청서'[10)]에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국 정부를 통해 후생노동성에 제출

---

8)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일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 활용방법,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 안내자료 참조

9)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에서 공적검사기관 확인 가능
※ URL : http://www.mhlw.go.jp/topics/yunyu/5/dl/t2.pdf

10) 사전확인서 기입사항 : 식품 등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국가명, 식품 등의 종류 및 명칭

❙ 첨부서류 목록 ❙

(식　품) 사용원재료, 성분조성 관련서류, 제조 또는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첨가물, 제조방법, 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발행 분석 증명서, 위생관리기준 관련 서류
(첨가물) 물질명, 제조방법 등에 관한 서류, 해당 첨가물이 사전확인제도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수출국 공적조사기관 분석증명서, 식품위생책임자가 작성한 위생관리기준 관련 서류
(기구, 용기, 포장) 재질 등에 관한 서류, 용도, 해당 물품 그림, 원재료가 식품 등 기준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의 분석증명서, 해당 제품이 사전확인제도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수출국 공적조사기관 분석증명서

나. 수입절차 등

❖ 제조자가 등록된 식품 등을 일본에 수출할 경우 ①식품 등의 용기포장에 등록번호 기재, ②제조자가 작성한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화물에 첨부, ③기타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해당식품 등의 등록번호임을 증명

❖ 등록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수입자는 식품 등 수입신고서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후생노동성에 제출하고, 후생노동성은 등록번호가 기재된 신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서류심사 종료 후 신고서를 수리하고 신속히 신고서의 복사본을 수입자에게 반환

❖ 후생노동성은 등록된 식품 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수입절차를 중지하고 수입화물을 보류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입절차를 중지한 경우 후생노동성은 그 이유 및 개선 요청 등에 대해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조자에게 연락

❖ 등록된 식품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 검사 실시

▌식품 수입 검역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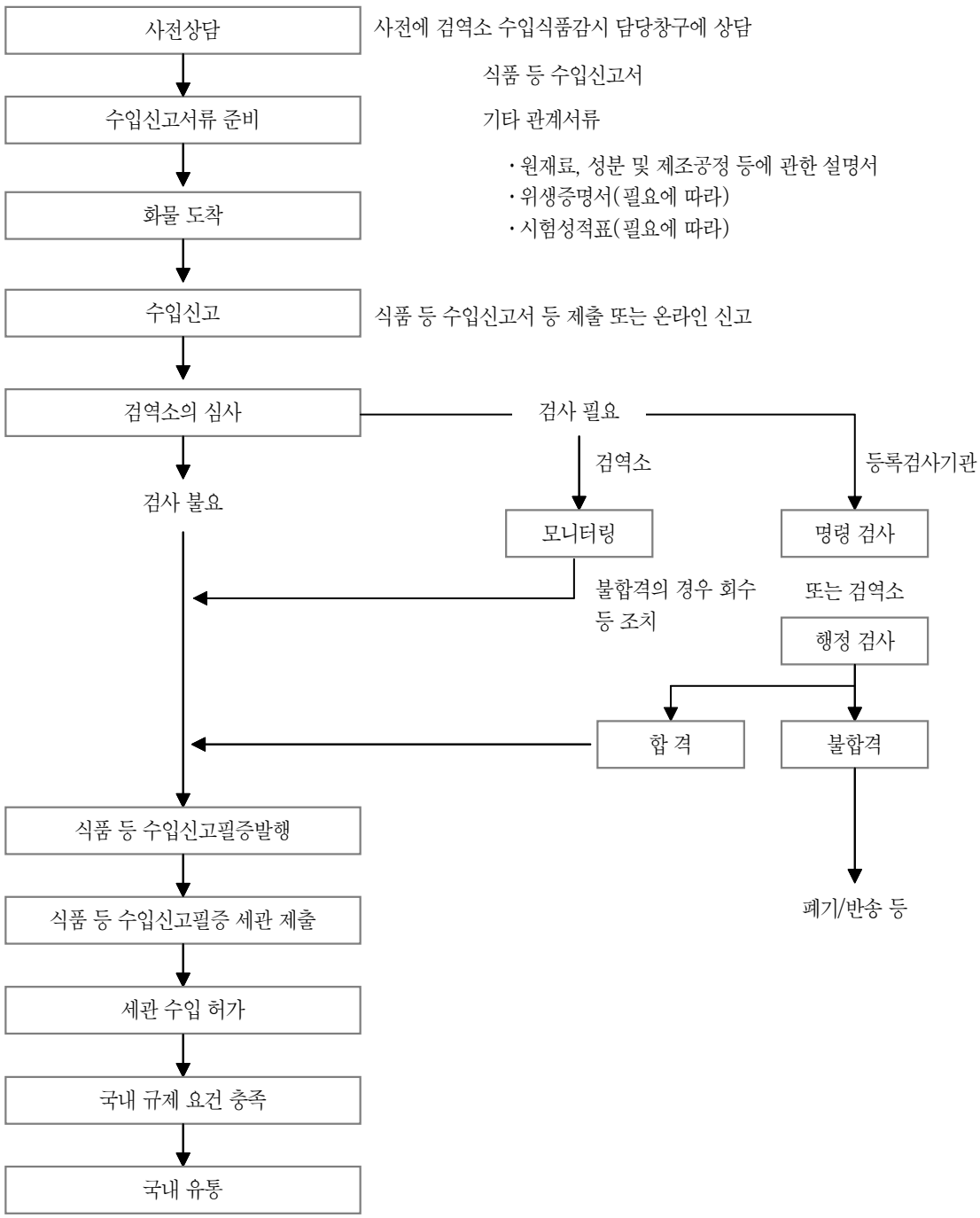
사전상담
사전에 검역소 수입식품감시 담당창구에 상담
수입신고서류 준비
식품 등 수입신고서
기타 관계서류
・원재료, 성분 및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위생증명서(필요에 따라)
・시험성적표(필요에 따라)
화물 도착
수입신고
식품 등 수입신고서 등 제출 또는 온라인 신고
검역소의 심사
검사 필요
검역소
등록검사기관
검사 불요
모니터링
명령 검사
불합격의 경우 회수 등 조치
또는 검역소
행정 검사
합 격
불합격
식품 등 수입신고필증발행
폐기/반송 등
식품 등 수입신고필증 세관 제출
세관 수입 허가
국내 규제 요건 충족
국내 유통

제5절

품목별 검역 유의사항

1. 과자(비스킷, 쿠키)

가. 검역 일반사항

❖ 관세분류번호(HS코드)

- 기본 : 곡물, 곡물가루, 전분 또는 우유 조제품 및 베이커리제품(HS1905)
- 관세율 : 6%~34%(원재료 및 성분에 따라 세율 다양)[11]

❖ 판매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후생노동성 검역소 식품 등 수입신청 접수창구에 '식품 등 수입신청서'와 필요서류(원재료, 성분 및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위생증명서(필요에 따라), 시험성적서(필요에 따라))를 제출

❖ 심사 결과 규격기준 또는 안전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건은 검사를 실시

❖ 심사 및 검사를 통해 해당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경우 세관으로 수입신고 때 통관서류와 함께 검역소로부터 발행받은 '식품 등 수입신청 완료증'을 제출하고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은 수입이 불가능하며, 수입자는 환송 또는 폐기 등 조치

나. 본선 수입전 소량 샘플통관

❖ 컨테이너 물량의 대량 물량을 수출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일본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이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량 샘플통관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소량이더라도 반드시 정식통관을 해야 하며, 일본 검역소로부터 검사가 필요한 항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일본정부가 인정한 국내 인증검사기관 또는 일본내 등록검사기관에서 검사성적서 발급받을 경우 통관이 허용되며, 이후 1년이내 동일 품목에 한해서는 최초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로 갈음하여 별도 검사없이 통관이 허용됨

11)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URL : http://www.customs.go.jp/tariff/2014_4/data/j_19.htm

다. 관련규제

1) 잔류농약

❖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12]에 의해 일정 이상의 농약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

2) 식품첨가물

❖ 일본에서 사용금지된 식품첨가물과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

3) 식품표시법

❖ 용기포장에 들어있는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법에 준하는 표시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함

- 명칭,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보존방법, 취급방법, 유전자조작 여부, 특정 원재료 사용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표시,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국가) 표시 등

❖ '유기', '오가닉'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유기 JAS기준에 의거한 등록인증기관의 검사 및 인증이 필요(국내 인증기관의 유기인증 취득하더라도 일본 내 사용불가)

4) 부당경품류 또는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경쟁규약

❖ 동 법에 의해 과도한 경품 포함 판매 혹은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위험이 있는 과대, 허위표시 등을 금지

❖ 또한 동 법에 의거하여 「비스킷류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비스킷 업에 있어 경품류의 제공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의 업계 자체기준이 있음

❖ 더불어 당 규약에 '비스킷'이란 밀가루, 당류, 식용유지 혹은 식염을 원료로써 필요에 의해 전분, 유제품, 계란제품, 팽창제, 식품첨가물 등의 원재료를 배합하고 또는 첨가한 것들을 혼합기, 성형기 또는 비스킷오븐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함. 또한 당 규정에 '쿠키'로 표시할 수 있는 비스킷은 손으로 만든 듯한 외형으로 당분, 지방분의 합계가 중량백분비로 40%이상의 것으로 기호에 따라 계란, 유제품, 견과류, 건조과일, 꿀 등으로 제품의 특징을 살려 풍미를 좋게 만든 것을 말함

12)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ositive List System) : 농약허용물질 목록

2. 삼계탕

가. 검역 일반사항

❖ 관세분류번호(HS코드)
- 닭고기조제식료품(HS16류)

❖ 관세율 : 0%~21.3%

나. 관련규제

1) 가축전염병 예방법

❖ 닭고기는 동 법에 의거하여 '지정검역물'이며, 수입 시에는 지정기일까지 수입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수입검사신청서(가축물)'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 등의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법 제40조)하고 검사 합격 시 '수입검역증명서'가 교부(법 제44조, 제45조)

- 가금육에 대해서는 조류독감 발생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
- 국가, 지역에 대해서는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이 있으며, 닭고기를 원료로 하는 소시지 등의 유래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함

2) 식품위생법

❖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후생노동성 검역소 식품 등 수입신고 접수창구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원재료, 성분 또는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위생증명서(필요에 따라) 시험성적서(필요에 따라))를 제출

❖ 심사결과, 규격기준과 안전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실시되며, 심사 및 검사가 동 법상 문제가 없다면 세관으로의 수입신고 시에 통관서류와 함께 검역소로부터 발행되는 '식품 등 수입신고 완료증'을 제출하고, 부적격이라 판단된 경우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자는 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식육의 수입에는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에 의한 위생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식육제품은 동 법에 의거한 성분, 제조, 보존에 대해서 규격기준이 있음

❖ 식품첨가물과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의 유무 등을 주의할 것.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발색제, 착색료, 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잔류농약기준(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으며, 일정 이상의 농약, 사료첨가물, 동물용 의약품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 금지

3) 식품표시법

❖ 용기포장에 들어있는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법에 준하는 표시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함

- 명칭,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보존방법, 취급방법, 유전자조작 여부, 특정 원재료 사용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표시,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국가) 표시 등

❖ '유기', '오가닉'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유기 JAS기준에 의거한 등록인증기관의 검사 및 인증이 필요(국내 인증기관의 유기인증 취득하더라도 일본 내 사용불가)

❖ 식육제품에는 개별품질표시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의

4) 부당경품류 또는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경쟁규약

❖ 동법에 의거한 업계 자주표시규약으로써 전국 식육공정취득협의회에 의한 「식육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햄, 소시지류 공정취득협의회에 의한 「햄, 소시지류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있음

3. 소스류

가. 검역 일반사항

1) 관세분류번호(HS코드) 및 관세율

❖ 간장(HS2103.10.000)

❖ 토마토 케첩(HS2103.20.010) / 관세율 7.2%

❖ 기타 토마토 소스(HS2103.20.090) / 관세율 17%

❖ 머스터드 분말 및 걸쭉하게 제조한 머스터드(HS2103.30) / 관세율 9%

❖ 드레싱(HS2103.90.120) / 관세율 10.5%

❖ 우스터 소스(HS2103.90.130) / 관세율 7.2%

※ 성분 및 원재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본 관세청 확인 필요

나. 관련규제

1) 관세정률법 / 관세잠정조치법

❖ 관세 할당은 농림수산성이 매년 수입 할당 수량을 정하여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 물량을 할당하고 이 할당량을 넘어 수입되는 경우에 높은 관세(이차 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자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임. 소스의 조성에 따라, 토마토 케첩, 토마토 및 토마토 페이스트(HS2002.90)는 EPA(경제연계협정) 관련 관세할당 범위가 있는 등 분류가 복잡한 품목이 있음

2) EPA

❖ 일본과 한국의 EPA는 협상중단 중이며, EPA에 기반한 특정 국가,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 또는 「개별관세할당제도」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함. EPA에 근거한 특정 국가,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 또는 「개별관세할당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

3) 식품위생법

❖ 규제내용으로써 수입 시에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기준에 유의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후생성고시 제370호「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으로 규정(잔류농약 등의 관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

❖ 포지티브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의 잔류기준은 0.01ppm 이하

4)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정해져 있는 물질의 함유를 주의해야 함. 일본에서는 사용에 규제가 있는 발색제, 착색료, 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음

- 산화방지제(BHA, BHT, TBHQ 외), 보존료(안식향산, 솔빈산 외) 착색료(Allura Red AC, Azorubin, Quinoline Yellow WS 외) 등의 식품첨가제가 사용되는 수입제품이 있으나 이것들은 일본에서 사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인정이 되나 사용대상 품목과 제한량 위반 시 수입 불가능

5) 식품표시법

❖ 용기포장에 들어있는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법에 준하는 표시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함

- 명칭,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보존방법, 취급방법, 유전자조작 여부, 특정원재료 사용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표시,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국가) 표시 등

❖ '유기', '오가닉'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유기 JAS기준에 의거한 등록인증기관의 검사 및 인증이 필요(국내 인증기관의 유기인증 취득하더라도 일본 내 사용불가)

6) 부당경품류 또는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경쟁규약

❖ 경품 포함 판매 혹은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위험이 있는 과대, 허위표시 등을 금지

❖ 소스류에 관해서는 업계단체가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있음

- 전국 토마토 가공품업 공정취급협의회(경품, 표시)

- 간장업 중앙공정취급협의회(경품, 표시)
- 일본 소스업 공정취급협의회(경품)
- 전국 드레싱류 공정취급협의회(표시)

7) 자원유효이용촉진법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 병, 페트병, 제지용기, 플라스틱 용기, 스틸캔, 알루미늄캔 등은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 재료식별 표시가 의무화되어있음. 특정 사업자(수입업자를 포함)는 용기 폐기물의 재활용이 의무화되어 있음

4. 음료

가. 검역 일반사항

1) 관세분류번호(HS코드) 및 관세율

❖ 미네랄워터(HS2201) / 관세율 : 3%

❖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물(HS2202) / 관세율 : 9.6%~13.4%

❖ 알콜분 0.5%이상의 주스(제22류)과실 또는 야채주스(HS2009)

나. 관련규제

1) 식품위생법

❖ 수입 시에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기준(식품위생법에 의거한 후생성고시 제370호「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으로 규정(포지티브리스트제도). 단, 포지티브리스트에는 없고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이 허용되는 일정량은 0.01ppm 이하 임

- 특히 생과일주스의 농약잔류기준에 유의해야 함

❖ 또한 식품첨가물과 사용기준에 정해져 있는 물질의 함유를 주의해야 함. 일본에서 인정되어지지 않는 식품첨가물과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로 보존료, 착색료 등이 함유되어 있는지 유의

2) 식품표시법

❖ 용기포장에 들어있는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법에 준하는 표시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함

- 명칭,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보존방법, 취급방법, 유전자조작 여부, 특정 원재료 사용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표시,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국가) 표시 등

❖ 음료와 같은 경우 과실음료, 탄산음료, 두유류, 당근주스 또는 당근 믹스주스로 각각 개별 품질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음. 상기 4품목과 사과 스트레이트 퓨어 주스에는 임의 JAS규격이 있음

❖ ‘혈압 유지’ 등 생리학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특정 보건용도에 적합한 표시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청에 따른 ‘특정보건용식품’의 인가절차가 필요함

4) 부당경품류 또는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경쟁규약

❖ 과도한 경품 부속판매와 소비자에게 오인 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표시 등 금지

❖ 동 법에 의거한 업계규약으로 과실음료 공정취급 협의회에 의한 과실음료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있음

5) 자원유효이용촉진법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 병, 페트병, 제지용기, 플라스틱 용기, 스틸캔, 알루미늄캔 등은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 재료식별 표시가 의무화되어있음. 특정 사업자(수입업자를 포함)는 용기 폐기물의 재활용이 의무화되어 있음

6) 관세정율법 / 관세잠정조치법(관세할당)

❖ 토마토 주스 중에 함유물 건조중량이 7%이상의 것은 토마토 퓨레, 페이스트와 동일하게 HS2002.90으로 분류 되어 관세할당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 농림수산성은 매년 수입할당량(기본 세율)을 정하여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물량을 할당하고 이 할당량을 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높은 관세(이차 세율) 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자를 보호

❖ 관세할당에 의한 1차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전에 관세할당 신청절차가 필요

5. 돈육 가공품

가. 검역일반사항

1) 관세분류번호(HS코드) 및 관세율

❖ 돼지고기(성상 등에 따라 다름)(HS0203, HS0206, HS0210)

❖ 소시지 등 조제품(HS16 류)

나. 관련규제

1) 차액관세제도

❖ 돼지고기 수입 시 보통 육류제품으로 규제 이외에 차액관세제도가 있음. 수입품의 가격이 낮을 때는 기준 수입가격보다 낮은 부분을 관세로 징수하여 국내 양돈 농가를 보호하는 한편, 가격이 높을 때에는 종가세를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임

- 소시지 등의 조제품에서 돼지고기로 분류 될 수 있는 것
  - 축산물 통조림 및 축산물 병조림
  - 베이컨류
  - 햄류
  - 프레스 햄 혼합 프레스 햄
  - 소시지 혼합소시지
  - 냉장 햄버거 스테이크(햄버거 패티)
  - 냉장 미트볼, 레토르트 파우치식품, 냉장만두
  - 조리 냉동식품 등

2) 가축전염병 예방법

❖ 소, 돼지, 양 등의 우제류의 고기는 동 법의 '지정 검역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동물검역소로 상담하고, 수입의 가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입 시에는 수입항을 관할하는 동물 검역소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

- 수입검사신청서(축산물)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검사증명서

❖ 동물 검역의 결과 합격하면 '수입검역증명서'가 교부됨(법 제 44조, 제 45조). 또한 악성 가축 전염병(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가능지역이 한정되어 있음(동 시행규칙 제 43조).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는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의 유래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

3) 식품위생법

❖ 식품의 수입에 있어 동 법의 규제를 받으며 후생성고시 제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 불가능

❖ [참고] 식품 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 식품 일반의 규격 기준 이외에 육류 제품은 성분 규격(아질산 뿌리 : 0.070g, 1kg 이하 등) 및 제조, 저장 기준의 규정이 있으며, 동 규격기준에는 잔류농약(포지티브리스트에 없는 농약의 허용치는 0.01ppm 이하) 식품첨가물 등의 함유에 관한 규정이 있음
- 잔류농약 등의 규제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의해 일정 이상의 농약, 사료 첨가제 및 동물용의약품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음
- 과거 위반사례에는 중국산 돼지고기와 해당 육류 가공품으로부터 크렌브테놀(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되었으며 수출신고를 비롯한 전품(제 26조 3항) 검사명령이 내려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발색제 등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적이 있음
- 판매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수입항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으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식품 등 수입신고서
  - 원재료, 성분 또는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보존방법 등을 표시한 자료,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검사기관 분석결과서 등)
- 심사단계에서 규격기준이 안전성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검사가 실시되며 심사, 검사에 의한 동 법상의 문제가 없으면 신고완료증이 돌아오므로 세관으로 수입신청 시에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함. 부적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며 수입자는 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4) 건강증진법

❖ 용기포장에 들어있는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법에 준하는 표시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함

- 명칭,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보존방법, 취급방법, 유전자조작 여부, 특정 원재료 사용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표시,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국가) 표시 등

❖ 신선품은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 가공품은 「가공식품품질 표시기준」 냉동품은 「야채냉동식품 품질표시기준」 등 관련 있는 품질표시 기준의 확인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웹사이트 '품질표시기준 일람'을 참조

5) 농림물자의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JAS법)

❖ '소시지 등의 조제품에서 돼지고기로 분류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JAS 규격(선택)이 있음

❖ 생산 정보 공표 돼지고기의 JAS 규격 숙성 햄류 숙성 소시지 류 숙성 베이컨류의 특정 JAS규격(모두 선택)도 있음

❖ '유기', '오가닉'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유기 JAS 기준에 따라 등록 인증기관의 검사 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음

6)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경쟁규약

❖ 과도한 경품 부속판매와 소비자에게 오인 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표시 등 금지

❖ 동 법에 근거하는 업계 표시 약관으로 전국 육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식육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햄·소시지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햄·소시지류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있음

제 4 장 라벨링제도

제 1 절 식품표시제도 일원화

❖ 일본 내 판매 또는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에 대한 표시기준은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 세가지 법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서로 목적이 상이하고 제도가 복잡

❖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식품표시규정을 소비자청에서 1 개의 일괄기준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통합운영

❖ 표시 의무화가 되어있는 표시범위(식품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

- 예외사항 : 식품위생법과 JAS법 기준의 통합에 있어서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에 대한 구분 등을 변경
-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후생노동성 소관), JAS법(농림수산성 소관)

❖ 식품의 분류는 사업자의 분류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첨가물로 구분

❖ 임의로 되어있던 영양표시에 대해서도 의무화

제2절

공통 품질 표시기준

1. 명칭

❖ 품명, 종류별, 명칭 등을 기재

- [예] 품명: 쿠키, 종류별: 과자, 명칭: 구운과자 등

2. 원재료명

❖ 사용한 원재료를 ① 또는 ②로 구분하여 이하 규정에 따라 기재

① 식품첨가물 이외의 원재료는 중량 배합이 많은 순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 단 2종류 이상의 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 순으로 괄호 안에 배합율이 높은 순으로 기재. 복합원재료의 배합비율이 주원재료에 5％미만인 경우 표기 생략가능

② 식품첨가물은 중량 배합이 많은 순으로 기재

3. 내용량(또는 고형량, 내용총량)

❖ 「특정상품 판매계량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중량은 그램(킬로그램), 체적은 리터(밀리리터), 수량은 개수 단위로 기재. 고형물에 충진액을 더한 통조림과 병조림의 경우 내용량 대신 고형량과 내용총량을 병기

4. 유통기한(또는 상미기한)

❖ 수입자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여 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음

① 제조로부터 유통기한까지 3개월 이내의 것은 다음 예 중에 하나를 기재

- 평성 26년 5월 31일
- 26.5.31
- 2014.05.31
- 14.5.31

② 제조로부터 상미기간까지 3개월을 넘는 경우, 다음 예 중에 하나를 기재

- 평성 26년 5월
- 26.5
- 2014.05
- 14.5

[주의] ②의 규정에 한정되지 않으며 ①규정을 따라도 됨

5. 보존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에서 보존', '10℃이하에서 보존할 것'('개봉 후는 요 냉장' 등의 유의 사항이 있는 경우는 기재 필요) 상온 보존하는 것 이외에 유의할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할 수 있음

6. 제조업자 등의 이름(또는 명칭) 및 주소

7. 원산국명(수입품의 경우)

❖ 용기 포장의 면적이 30평방㎝ 이하의 경우는 원재료명, 유통기한, 보존방법 표기

제3절

유기JAS제도

1. 유기농산물

❖ 농업의 자연환경 기능유지 증진을 위해 이하의 방법으로 생산된 농산물

-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하지 않은 것
- 퇴비 등을 거름으로 사용하고 파종 또는 이식 전 2년 이상 금지된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재배지에서 생산
-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것
- 사용 가능한 농약, 화학 비료 등의 사용 자제

2. 유기축산물

❖ 농업의 자연환경 기능유지 증진을 위해 이하의 방법으로 생산된 축산물

- 환경의 부하가 적은 사료를 공급
-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
- 동물의 생리학적, 행동학적 측면에서 배려된 환경에서 사육된 가축, 가금류

3. 유기가공식품

❖ 원재료의 유기적 특성을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생산되는 제품

- 물리적 또는 생물의 기능을 이용한 가공방법으로 생산
-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 또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원재료는 물과 식염을 뺀 95%이상이 유기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4. 명칭의 표시 및 규제

❖ JAS법에 따라 유기 JAS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 되었는지를 등록 인증기관이 검사하고 그 결과 공인 된 사업자만 '유기 JAS 마크' 사용가능

❖ 사용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기○○', '오가닉△△'라고 표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만엔 이상의 벌금부과

❖ JAS마크 등록인증기관 리스트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공개

JAS마크, 등록인증기관명

5. 유기JAS제도에 의한 유기 수입식품

❖ 일본의 유기JAS제도와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인증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유기JAS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로 유기JAS마크를 획득했으나 2013년 4 월 1 일부터 해당 수입업자가 수출국의 유기인증제도에 따라 인증된 해외사업자에게 유기 JAS 마크 부착을 위탁

제4절

알레르기 표시

1. 알레르기 표시 개요

❖ 특정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소비자의 건강 위해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과거 건강 유해 등의 정도 빈도를 고려해 가공식품의 용기 포장에 특정원재료의 사용 사실 표기를 의무화

❖ 특정가공식품(식품에서 특정원재료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표기) 및 확대표시 제도는 폐지

2. 알레르기 표시 기준

가. 특정원재료 표기

1) 특정원재료 종류

구분	특정원재료 명칭	이유
표시의무	계란, 우유, 밀가루, 땅콩, 새우, 메밀, 게	발병 증상수 혹은 증상을 감안하여 표시할 필요성이 높은 것들
표시장려 (임의표시)	연어알, 키위, 호두, 대두, 바나나, 마, 캐슈넛, 복숭아, 깨, 고등어, 연어, 오징어, 닭고기, 사과, 송이버섯, 전복, 오렌지, 소고기, 젤라틴, 돼지고기	발병수와 증상이 심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특정원재료에 비해, 적거나 특정원재료로 지정 유무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 조사가 필요.

※ 특정원재료의 명칭은 2011~2012년 전국 실태조사 발병수 순위로 기재

2) 표시방법

❑ 개별표시 예시(원칙)

원재료명	준초코렛(팜유(대두포함), 설탕, 전지분유, 코코아파우더, 유당, 카카오마스, 식염), 밀가루, 쇼트닝(소고기포함),설탕, 계란, 콘시럽, 우유 또는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 포도당, 맥아당, 가공유지, 카라멜시럽, 식염
첨가물	소르비톨, 주청, 유화제, 팽창제, 향료

❑ 일괄표시 예시(예외적 허용)

원재료명	준초코렛(팜유, 설탕, 전지분유, 코코아파우더, 유당, 카카오마스, 식염), 밀가루, 쇼트닝, 설탕, 계란, 콘시럽, 우유 또는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 포도당, 맥아당, 가공유지, 카라멜시럽, 식염(일부 소맥, 계란, 유성분, 소고기, 대두를 포함)
첨가물	소르비톨, 주청, 유화제, 팽창제, 향료(일부 대두. 유성분을 포함)

나. 컨태미네이션(오염)

❖ 특정원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을 제조할 경우에도 다른 제품의 특정원재료 사용 등으로 인해 컨태미네이션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경우 주의 환기를 위한 표기 권장

- 표시예 : 본 제품 제조공장에서(특정 원재료 등의 명칭)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5절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1. 영양성분 표시 개요

❖ 식품에 표기하는 영양성분표시는 당초 임의표시사항이었으나 2015.4.1.일부터 시행된 일본 소비자청의 '신식품표시제도'에 따라 별도 면제되는 식품 이외는 영양성분 표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

- 한국에서는 이미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 식염량을 식염상당량으로 계산하여 표기하여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

❖ 용기포장을 한 가공식품은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등 5가지 성분의 표시가 의무화되었으며, 나트륨량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식염상당량'으로 바꾸어 표시

- 의무표기 :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식염상당량)
  ※ 식염상당량(g) = 식염량 × 2.54/1,000
- 임의(권장) : 포화지방산, 식이섬유
- 임의(기타) : 당류, 당질, 콜레스테롤, 비타민, 미네랄류, n-3계 지방산, n-6계 지방산

2. 영양성분 표시기준

❖ 영양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할 경우

- 1단위(100g, 100ml, 1식분, 1포장 등)으로 표시
- 열량(Kcal),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또는 당질, 식이섬유) 나트륨의 순으로 표시(필수 5항목), 그 밖의 영양성분(칼슘, 비타민C 등)은 나트륨 다음으로 표시

❖ 영양성분의 함유량을 강조하기 위해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 등에 대해 '고(高)', '저(低)', '무(無)'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함유량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기준치는 소비자청 웹사이트를 참조

❖ 영양성분표기 면제대상 품목

- 원칙적으로 소비자대상으로 판매하는 모든 가공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서는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
  - 표시가능면적이 30㎠이하인 것
  - 주류 등 영양공급원으로서 기여도가 작은 것
  - 아주 짧은 단기간에 원재료가 변경되는 것
  - 소비세법 제9조에 의한 소규모사업자(과세 대상 매출액 1천만엔 이하)

❖ 주의사항

- 영양성분표시는 실제 성분치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어야 함
- 원재료에 대한 규격서 등 서류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영양성분에 대한 분석치나 계산근기 자료 등 정보체계 관리에 주의할 것

▌영양성분 표시예 ▐

영양성분표시 식품단위당	
열량	Kcal
단백질	g
지질	g
탄수화물	g
식염상당량	g

제6절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1. GMO 개요

❖ 식품위생법 상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은 금지되며 수입대상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유전자변형 성분이 일본에서 인가된 것에 한하여 식품 표시가 가능

❖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 안전성 심사는 식품위생법(2001년 4월 규격기준개정)에 의해 의무화되어 식품안전기본법(2003년 7월 실행)에 의한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유전자변형 식품 등 전문조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 짐
- 안전성 심사절차를 거친 유전자 조작식품 또는 첨가물은(후생노동성의 웹사이트 「안전성 심사의 수속을 끝낸 부분의 공표가 된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첨가물 일람」에서 확인)
- 현재 1-1에 기재된 감자와 대두 등 8종류(254품종)의 식품과, a-아밀라제, 키모신, 프루라나제, 리파제, 리보플라빈, 글루코아밀라제, a-글루코시루트란스페라제의 7종(16품목)의 첨가물 인가
-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 시장에 출하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는 폐기, 회수명령(수입자의 경우에는 환송 명령) 등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

2. GMO 표시기준

❖ 식품을 수입판매 할 경우는, 원칙으로 소비자청의 식품표시제도에 의거하여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특히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변형에 관한 품질 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변형된 DNA 농산물 사용이 원재료의 5%이상을 차지할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대상 품목>

- 일본에서 이미 식품 안전성 심사를 거친 유전자변형 작물이 존재하며, 이하 8종류의 농산물이 그에 해당됨
  - 대두(풋콩 또는 대두의 콩나물 포함)
  - 옥수수
  - 감자
  - 유채
  - 목화
  - 알팔파(허브의 일종)
  - 사탕무
  - 파파야

❖ 단, 아래 해당하는 식품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의 유무표시 의무 예외

- 대두(풋콩, 포함) 옥수수, 감자, 유채, 목화,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 어떤 것도 주요 원재료가 아닌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했으나 변형된 유전자 또는 유전자를 만드는 단백질이 제품 중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예: 기름 또는 간장)
-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 7 절

식품첨가물 표시

1. 식품첨가물 개요

❖ 식품첨가물 종류

- 지정첨가물(안전성을 평가한 위에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것 436품목)
- 기존첨가물(일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된 것, 예외적으로 지정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치자색소, 감 탄닌 등 365품목)
- 천연향료(동식물유래의 물질이 식품에 향을 첨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것. 바닐라향료, 게 향료등 약 600품목)
- 일반적인 음식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딸기 주스, 한천 등 약 100품목)

❖ 특히 지정첨가물과 기존첨가물은 포지티브리스트 식품첨가물로써, 이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첨가물의 사용은 인정하지 않음

2. 식품첨가물 표시기준

❖ 원재료 표시란에 원재료와 식품첨가물을 반드시 구분하여 표기해야하며, 식품첨가물이 많은 순으로 표시

- 원재료와 식품첨가물을 슬래시, 줄바꿈, 줄표, 원재료명 아래 표기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원료와 식품첨가물의 분류를 명확화 해야함

❖ 물질명 표시

- 식품첨가물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물질명 표시하되 첨가물의 화학명은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고, 알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첨가물의 품명(간략명, 종류명)을 정하고 이를 표기
  - (예) 화학물질명 L-아스콜빈산(간략명; 아스콜빈산, V.C)

❖ 용도명을 병기

- 보존료와 감미료 등 다음 8종류의 용도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로써, 물질명과 더불어 그 용도명을 함께 표시
- 용도명을 병기할 첨가물 : 감미료, 착색료, 보존료, 증점제, 안정제, 젤화제 또는 점료, 산화방지제, 발색제, 표백제, 곰팡이방지제 또는 방부제
  - (예)감미료(키시리톨), 착색료(치자색소)

❖ 일괄명으로 표시

- 미량의 물질을 조합 하여 만드는 식품용 향료는 배합한 물질 모두를 표시하는 것 보다 일괄로 「향료」라고 표시하는 편이 더 알기 쉽기 때문에 다음 용도에 사용될 경우에는 물질명 대신 사용되는 목적을 나타내는 일괄명으로 표시할 것이 인정
  - 이스트푸드, 껌 베이스, 알카리 염수용체, 효소, 광택제, 향료, 산미료, 연화제, 조미료, 두부용 응고제, 고미료, 유화제, pH조정제, 팽창제
  - (예) 구연산 → 산미료, 레시친 → 유화제

❖ 표시 생략

- 영양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또는 가공조제, 캐리오버에 해당하는 첨가물은 표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음

제8절

보건기능식품 표시

1. 보건기능식품 개요

❖ 일정 조건에 달하는 건강식품은 보건기능식품이라고 표시(건강증진법)

❖ 단, 식품 위생법과 JAS법에 정해진 품질표시기준과 알레르기 물질 표시 유전자변형 원재료 등의 판매표시 의무와는 다름

❖ 보건기능식품 표시제도는 임의표시로 수입자가 국내 판매 시 표시를 희망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해진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함

❖ 식품은 크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는 일반식품과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보건기능식품으로 구분하며, 일반 시중에서 영양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조정식품이라고 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일반식품에 해당

- 일반보건용식품 및 영양기능식품 이외의 식품에는 식품이 가지고 있는 효과와 기능을 표시할 수가 없음
- 의약품 승인을 받지 않고, 그 효능 및 효과 등에 관한 표시는 '약사법'에 의해 공정한 경쟁 또는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어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에 의해 금지

가. 특정보건용식품

1) 특정보건용식품 개요

❖ 특정보건용식품(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을 포함)은 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특별용도식품의 하나로 신체의 생리학적 기능과 생물학적 활동에 관여하는 특정 보건기능이 있는 성분을 섭취하므로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고 특정보건 용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품

❖ 특정보건용식품은 ①특정보건용식품, ②질병위험저감표시 특정보건용식품, ③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 ④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총 4가지로 구분하여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①~③은 동일한 허가 마크를 사용하고 ④만 '조건부'라는 표기가 추가된 허가 마크 사용

① 특정보건용식품

- 건강증진법 제26조 제1항의 허가 또는 동법 제29조 제1항의 승인을 받아 식생활에서 특정한 보건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 대해 그 섭취에 의해 해당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를 표시한 식품

② 질병위험저감표시 특정보건용시품

- 관여성분의 질병위험 저감효과가 의학적, 영양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 질병위험저감표시를 인정하는 특정보건용식품

③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

-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허가실적이 충분한 경우 등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는 관여성분에 대해서 규격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위원회의 개별심사 없이 사무국에서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특정보건용식품

④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 특정보건용식품의 심사에서 요구되는 유효성의 과학적 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정 수준의 유효성이 확인된 식품을 한정적인 과학적 근거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대상으로 인정하는 것
- 표시 예: ○○를 포함하고 있어 근거는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 제품별로 식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표시를 위해 소비자청의 허가를 받아 해당 마크를 부착

❖ 해외 공적기관에 의해 건강효과 표시가 인정된 식품이라도 일본에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특정보건용식품」이라고 표시할 수 없음

▌특정보건용식품 허가마크▐

소비자청 허가/특정보건용식품	소비자청 허가/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2) 신청절차

❑ 보건소 표시허가신청

❖「표시허가 신청서」를 영업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보건소에서 각 도도부현을 거쳐 소비자청에 전달)

❖ 표시허가 신청서 주요 기재사항

-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명칭,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이름, 설립일자)
-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제조소)
- 상품명

- 유통기한 또는 상미기한
- 내용량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유 및 해당식품이 국민식생활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고 그 섭취가 국민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는 이유
- 허가를 받고자 하는 표시의 내용
- 원재료의 배합
- 제조방법
- 영양성분량, 열량
- 1일 섭취기준량
- 섭취 상의 주의사항
- 주의사항(섭취, 조리, 보존방법에 관해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
- 기타 유통기한의 표시방법, 제조소 소재지 또는 제조자의 표시방법, 신청구분,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

❑ 소비자청 식품표시과 심사신청

❖ 보건소로 신청 후 '심사신청서'에 I. 의 '표시허가신청서'의 복사본과 함께 이하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청 식품표시과로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자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설립)
- 표시견본
- 식품이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섭취를 통해 국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도모하는 이유, 1일 섭취기준량 또는 섭취상의 주의사항
- 보건의 용도 등, 각 항목별에 사용하는 문헌 등의 요약
- 보건의 용도 등, 각 항목별로 사용하는 문헌 등의 일람
- 영양 성분량 또는 열량의 시험검사 성적서
- 식품중의 특정 보건목적이 되는 영양성분의 정량시험의 시험검사의 성적서, 시험검사의 방법을 기재한 자료
-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 (첨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의 첨부가 필요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
- 보험용도, 안전성 등 각 항목별 사용한 문헌 등(유효성, 1일당 섭취기준량, 안정성, 관여성분의 물리적, 과학적, 생물학적 성상 등을 명확하게 한 자료)

❑ 국립건강영양연구소(또는 등록시험기관) 분석의뢰

❖ 허가시험은 국립건강 영양연구소 또는 나라의 등록을 받은 시험기관이 실시. 상기 절차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식품의 분석용 샘플에 '표시허가 신청서'와 「심사신청서」의 복사본을 구비하여 분석을 의뢰하고, '분석결과(시험성적서)'를 소비자청에 제출

❖ 소비자청은 소비자위원회, 식품안전 위원회, 후생노동성에 자문 또는 의견 조회를 하여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소비자청 장관에 의한 허가서가 각 도도부현으로부터 보건소를 통해 교부

❖ 표시할 때에는 허가 내용과 같이 정해져 있는 방법대로 표시하는 것이 의무

나. 영양기능식품

1) 영양기능식품 개요

❖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비타민, 미네랄)의 보충을 위한 식품으로 영양성분의 기능을 표시한 식품으로서 1일당 섭취 기준량을 포함한 비타민류 12종, 미네랄류 5종이 국가에서 정한 상·하한치의 범위 이내의 식품을 의미하며, 건강증진법 제31조의 의하여 정해진 표시 기준 규격에 적합하면 허가신청과 신고 등 불필요

- 해당 영양성분 : 아연, 칼슘, 철, 구리, 마그네슘, 나이아신, 판토텐산, 피오틴, 비타민 A, B1, B2, B6, B12, C, D, E, 엽산

2) 대상품목

❖ 시행 당시 드링크와 어린이용 과자가 대상이었으나, 이후 스테풀, 유제품, 디저트, 스낵, 농산가공품, 축산가공품, 수산가공품, 통조림, 조미식품, 조미료, 분유 등 대상 품목이 확대

3) 영양기능식품 표시

❖ 법령으로 정해진 표시 의무사항 및 표시 금지사항을 특히 주의

- 영양기능식품의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영양성분 이외의 성분의 기능을 표시하거나 특정 보건 용도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됨
  ※ 금지 예 : 다이어트 가능, 눈이 피로한 분에게
- '영양기능식품(비타민C)'과 같이 영양기능표시를 하는 영양성분의 명칭을 '영양기능식품'의 표시에 이어서 표시할 것
- 마치 소비자청 장관이 개별적으로 심사 등을 한 것처럼 표시 금지
  ※ 금지 예 : 소비자청 장관 인정 규격기준 적합

❖ 과대표시 및 오인 될만한 표시의 금지

- 광고에서 사실과 상이한 표시 또는 오인될 만한 표시 금지(제 32조 2항)
-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만한 과대 허위표시 금지(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경품표시법)
- 효능, 효과를 과대광고 하거나 의약품과 오인이 될 만한 표시금지(약사법)

라. 기능성표시식품

1) 기능성표시식품 개요

❖ 2015년 4월 식품업계의 새로운 제도로서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시행

- 그동안 일본의 기능성 식품 시장에서는 국가가 개별적으로 허가한 특정보건용식품(토쿠호)와 국가의 규격기준에 적합한 영양기능식품으로 한정
- 이에 기능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상품의 선택지를 늘려 소비자가 그러한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도입

❖ 기능성표시식품의 분류 및 대상품목

- 서플리먼트, 일반가공식품, 신선식품으로 분류됨
- 신선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이 대상이 되지만,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 제외

❖ 기능성표시식품 대상이 아닌 식품의 판단

-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미성년자, 임산부(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자 포함), 수유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
- 기능성 관여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
- 기능성 관여 성분이 식사섭취 기준에 정해진 영양소(비타민, 미네랄, 올리고당, 복합지질 등)

- 특별용도식품(특정보건용식품 포함), 영양기능식품, 알코올 함유 음료
-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당질(단당류 또는 이당류로 당알코올이 아닌 것에 한함),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이어지는 식품

* 막걸리, 맥주 등 알코올 제품과 김치, 젓갈류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절임류 제품은 대상 제품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음. 단, Non-알코올인 경우 맥주일지라도 탄산음료로서 분류되어 기능성표시식품이 될 수 있음

2) 기능성표시식품 표시

❖ 신제도에 의해 기능성을 표시하는 경우, 식품표시법에 근거하여 식품표시기준과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신고와 용기포장 표시 필요

❖ 해당식품에 관한 표시내용, 식품관련 사업자명 및 연락처 등의 식품관련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 안전성 및 기능성의 근거(소비자청 웹사이트에 공개)에 관한 정보, 생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 건강피해 정보수집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판매개시일 60일 전까지 소비자청에 신고해야 함

❖ 표시사항

-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 기능성 관여 성분 및 해당성분 또는 해당성분을 함유하는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 1일당 섭취기준량
- 1일당 섭취기준량 당 영양성분량 및 열량
- 1일당 섭취기준량 당 기능성관여 성분 함유량
- 소비자청 신고 번호
- 식품관련 사업자 연락처(전화번호)
- 기능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 정부에 의한 평가를 받지는 않았다는 문구
- 섭취방법
- 섭취 시 주의사항
- 균형있는 식생활 보급 계몽을 도모하는 문구
- 조리 또는 보존방법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사항
- 질병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
- 질병에 걸린 사람, 미성년, 임산부(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포함) 및 수유자에 대한 기능성 소구가 아니라는 점(단, 신선식품은 제외)

- 질병환자는 의사,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의사 및 약제사에 상담한 후에 섭취하여야 한다는 문구
- 컨디션에 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지체없이 섭취를 중지하고 의사에게 상담토록 하는 문구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사례 ▐

기능성 표시식품
신고번호 △△

●●●(상품명)

<신고번호>
본제품은 ◇◇을 함유하고 있어 □□기능이 있습니다.

본제품은 사업자의 책임하에 특정보건의 목적이 기대되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서 소비자청장관에게 신고 된 것임. 단, 특정보건용식품과 달리 소비자청장관에 의한 개별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님.

제9절

개별 가공식품의 품질표시 기준

❖ 이하의 품목에는 개별 품질표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

- 통조림, 병조림
  - 농산물 통조림 및 병조림, 축산물 통조림 및 병조림, 조리식품 통조림 및 병조림
- 음료
  - 과실음료, 탄산음료, 두유류, 당근주스, 당근믹스주스
- 식육제품 또는 어육가공제품
  - 베이컨, 햄류,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소시지, 혼합소시지, 냉장햄버거 스테이크, 냉장미트볼, 어육햄 및 어육소시지
- 곡류 가공품
  - 건조면류, 즉석면, 마카로니류, 냉동 두부, 빵류
- 농산물 또는 임산물가공품
  - 농산물절임, 토마토 가공품, 잼류, 건조버섯
- 수산물가공품
  - 성게가공품, 성게무침, 건조미역, 염장미역, 가츠오부시, 조림, 말린 생선류, 장어 가공품
- 조미료
  - 드레싱, 드레싱타입의 조미료, 식초, 풍미조미료, 말린 해초수프, 우스터 소스류, 간장
- 유지 또는 유지가공품
  - 식용식물유지, 마가린류
- 그 밖에 레토르트파우치 식품, 야채냉동식품, 냉장 만두류, 조리냉동식품

제 5 장 2016년 주요 변경사항

제 1 절 일본 고추(고춧가루 포함) 잔류농약 기준치 완화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6.4.4일자 관보 고시를 통해 고추에 사용하는 농약성분인 지페노코나졸에 대한 기준치를 개정 완화 조치함

❖ 지페노코나졸 성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기준치 개정요청을 한 바 있어 이에 대해 계속적인 검토를 해왔던 바, 금번 기준치가 0.01ppm에서 1ppm으로 개정됨으로써 향후 대일수출 고춧가루의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대일수출 한국산 고춧가루(생고추 포함)는 잔류농약 기준치 위반으로 인해 2013. 11.7.부터 일본 검역소의 명령검사 상태로 묶여 있어 일본 수출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

❖ 지페노코나졸 성분 기준치 개정 내용

품목명	농약성분	한국기준치 (ppm)	일본 기준치(ppm)	
			종전 기준치	금번 개정기준치
기타가지과 야채류 (고추, 고춧가루 포함)	지페노코나졸 (DIFENOCONAZOLE)	1.0	0.01	1

제2절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가이드라인 변경

1. 제도시행 후 경과사항

❖ 2015. 4. 1부터 시작된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시행

❖ 제도 개시 1년이 경과되면서 일부 운영사항에 대한 변경 등이 이루어졌는데 제도 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정해 왔던 기 시작된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사전등록을 생략 가능토록 한 특례 인정이 2016년 4월 이후부터 개시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사전등록이 필요시 됨

❖ 신청방법도 기존 우송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동시에 등록신청된 상품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13]하도록 DB화 되었음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내용

❖ 해당식품 또는 기능성 관여성분이 「의약품 전용으로 사용되는 성분본질(원재료)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및 식품위생법에 대한 저촉 여부를 확인

❖ 기능성 관여성분과 동일한 관여성분이 특정보건용식품에 있어서의 안전성 심사가 실시되었는지 유무 등에 대해 신청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 조직도 제출 시 신청자의 조직 내에 있어서 건강피해정보의 대응 창구부서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소비자청, 지자체 등(보건소)에 대한 보고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등

13) URL : https://www.fld.caa.go.jp/caaks/cssc01/

제3절

유제품 및 식품첨가물 규격기준 개정

1. 유제품 성분규격 일부 개정

❖ 유제품의 성분규격에 관한 후생성령이 일부 개정

- 탈지농축유의 제조관련 단백질 양을 조정하기 위해 유당 및 생유, 우유, 특별우유, 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또는 무지방우유 등을 여과에 의해 발생한 것을 사용토록 허가
- 탈지농축액의 제조기준 관련 탈지분유와 동일한 유지방식을 인정 63℃에서 30분간 가열 또는 동등 이상의 살균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 및 공정 중에는 10℃ 이하 또는 48℃를 넘는 온도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법을 인정함
- 탈지농축액의 보존기준에 대해 제조실태에 근거하여 <농축후 바로 10℃ 이하에서 냉각하여 보존 할 것>에서 <농축후(농축후 살균한 경우에는 살균 후) 바로 10℃이하에서 냉각하여 보존 할 것>으로 개정함

❖ 시행일 : 공표일부터 시행(2016.6.8.)

2.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 개정

❖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를 2016.6.8일자 아래와 같이 개정함

-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생식용 선어개류, 생식용굴 및 냉동식품(생식용 냉동선어개류에 한함)의 가공기준에 있어서 아염소산수, 하이포 염소산수 및 하이포 염소산나트륨과 수소이온농도조정제(PH조정제) 로서 사용되어지는 염산과 pH 조정제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의 사용을 허가함
- 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황산아연의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새로이 발포성 주류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함
- 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폴리에틸렌 나프타레트를 주성분으로 한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 개별 규격을 설정함

❖ 운용 상의 주의사항

-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생식용 선어개류 등에 대해 하이포 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함에 따라 pH조절제로써의 사용을 인정하나, 생식용 선어개류 등에 대한 가공 시 이산화탄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황산아연은 발포성 주류 제조 시 이스트후드 목적으로 발포성 주류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한 것임
- 황산아연의 사용 시에는 적절한 제조공정 관리를 실시하고 식품으로서의 목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 시 되는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4절

수입식품 글루텐프리 제품의 표시 감시강화

1. 알레르기 표시 적정화를 위한 감시강화

❖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표시 적정화를 위한 대응방안(2016.6.2.)을 발표한 바, 수입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표시사항에 대해 주의가 필요시 됨

❖ 미국 및 EU 등의 「글루텐 프리표시」와 일본의 「알레르기 표시」 제도는 서로 기준이 상이함으로 수입식품의 경우 원재료에 포함된 알레르겐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등의 표시기준 : 특정질병 환자들의 상품선택 편의를 돕기 위해 글루텐 농도가 20ppm이하일 경우 「글루텐프리표시」 가능
- 일본의 알레르기 표시기준 : 식물 알레르기가 아주 미량의 알레르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밀가루 등의 소량의 특정원재료를 포함하는 식품의 경우 사용의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특정원재료 포함 표시 필요

2. 글루텐프리 식품의 표기 주의사항

❖ 밀 알레르겐을 포함하는 식품에 대해 「글루텐프리」를 강조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밀 알레르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오인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입표기 시 주의 필요

❖ 현재 수입식품 표기 시 「동일공장의 제조라인에서 밀가루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라는 혼입가능성 주의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회수 등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도 표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제5절

일본 농림수산성 병원식 JAS규격 신규 제

❖ 일본 농림수산성은 고령자층을 위한 간호식에 대한 농림식품규격을 2016.8.17.로 제정하여 해당상품에 대한 JAS마크 표시가 가능해짐

- 2002년 일본 간호식품 업체를 중심으로 설립된 일본개호식품협의회가 식품업체별 구분을 통일하고 유니버셜디자인푸드(UDF)[14]특유의 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금번 제정을 통해 고령자층을 위한 개호(간호)식품을 정부가 규격화하여 음식의 딱딱한 정도 등의 먹기 쉬움을 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UDF 민간규격도 사용 가능하나, 2017년부터는 JAS기준으로 일원화될 전망임

❖ 「유니버셜디자인푸드(UDF)」의 시장동향

- UDF의 2015년도 생산액은 201억엔, 생산량은 16,000톤 규모
- 생산액이 가장 늘어난 것은 잇몸으로 으깰 수 있는 「구분2」의 식품으로, 66%증가한 19억 4000만엔, 일상식에 가장 가까운 「구분1」도 눈에 띄게 증가하여 37%늘어난 생산액 32억 8500만엔 수준

14) UDF(Univeral Design Food) : 일본개호식품협의회가 소비자의 신체적 능력(씹는 능력 등)에 맞추어 식품별 경도를 1~4단계로 수치화해 식품의 형상, 물성 및 식품용기 등을 감안하여 제조한 식품

제6절

대일 수출 참외 전수검사 명령

❖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9.28일자로 한국산 참외에 대해 전수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함

❖ 한국산 참외는 금년들어 농약성분인 클로르페나필 성분이 연속 2회 검출되어 복수위반 시 검사명령으로 이행하는 일본 감시지도계획에 의거 검사명령이 발동

❖ 잔류농약 위반내역

품목명	위반확정일	농약성분	한국기준치 (ppm)	일본기준치 (ppm)	위반치 (ppm)
참 외	2016.9.15	클로르페나필 (chlorfenapyr)	0.5	0.01	0.02
참 외	2016.8.23	클로르페나필 (chlorfenapyr)	0.5	0.01	0.02

※ 1차 위반 후 모니터링 검사 30% 빈도 강화 후 위반사례 재차 발생, 2차 위반은 핸드캐리 물건

년 도	통관신고건수	수입중량(톤)	검사건수	위반건수
2015.4-2016.3월	486	123	15	0
2016.4-9.15일	328	105	19	2

※검사건수는 잔류농약 클로르페나필 관련

제 7 절

대일수출 가능 육류 열처리 가열육 승인업체 리스

❖ 우리나라는 현재 구제역 발생국으로 인해 소, 돼지 등의 우제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열처리 사전 승인공장에 한해 대일 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 현재 대일수출이 가능한 제품은 돈가스, 햄, 소시지, 냉동만두 등 육류가 포함된 경우에도 일부 승인제품에 한해서는 수출이 가능

❖ 공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로 문의

▌농림수산성 승인공장 리스트▐

NO	NAME	ADDRESS	육류	햄·소세지 ·베이컨
404	NATIONALAGRICULTURALCOOPERATIVESFEDERATION MOGUCHONUMSUNG CHICKEN PROCESSING PLANT	81,DAEGEUM-RO 1278BEON-GIL, GEUMWANG-EUP,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KOREA	○	○
J01511001	DINEJEJUCO.,LTD	26-3, HAGWI-RO 25-GIL, AEWOL-EUP,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K01513002	FOODWARE CO., LTD.	28-38, SUNDONGSANDAN 1-GIL, GIMJE-SI, JEOLLABUK-DO, KOREA	○	○
M01510004	JANGCHUNGDONG WANG JOKBAL. CO., LTD.	232-28, SEONDONG 2-GIL, HYEONDO-MYEON,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 DO, KOREA	○	○
M01511004	EUFOODS,INC.	155, CHUKHANG-DAERO 290BEON- GIL, JUNG-GU, INCHEON	○	○
SR1513001	GUSBE CO., LTD.	898,YANGJIN-RO, JINJEOP-EUP, NAMYANGJU-SI, GYEONGGI-DO, KOREA	○	○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http://www.maff.go.jp/aqs/tetuzuki/facility/pdf/heatlist-korea.pdf)

제 6 장 통관문제사례 및 대응방안

제 1 절 통관문제사례 동향

❖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 및 식품조리기구의 통관거부 건수를 월별로 발표하며, 불합격 상품에 대해서는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

❖ 2016년 일본에서 통관이 거부된 식품(조리기구 제외)은 총 737건에 달했으며, 이 중 한국산은 총 20건으로 전체 2.7%를 차지, 11월 통관 거부율이 8.3%로 가장 높음

▌2016년 월별 일본 식품통관 거부건수 ▐

	한국산 불합격 건수(A)	한국산 누계(B)	전체 불합격 건수(C)	한국산 비율(A/C)
1월	-	-	67	-
2월	2	2	56	3.6%
3월	1	3	76	1.3%
4월	3	6	41	7.3%
5월	1	7	55	1.8%
6월	0	7	72	0.0%
7월	0	7	61	0.0%
8월	3	10	59	5.1%
9월	2	12	60	3.3%
10월	1	13	42	2.4%
11월	7	20	84	8.3%
12월	-	-	64	-
합계	20	20	737	2.7%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 2016년 일본에서 수산물, 김치류, 과실류, 기타조제농산품 등이 주요 통관거부 품목이었음

- 2016년 수산물이 9건으로 가장 많은 통관거부 사례를 기록했고 그 다음은 기타조제농산품(4건), 과실류, 음료(2건)가 뒤를 이었음
- 2016년 농산물 부문에서는 참외의 잔류농약(클로르페나피르 기준치 초과) 문제, 김치 미생물 검출(대장균 양성반응) 문제가 두드러짐
- 그 외에 생강꿀절임, 생강차에서 식품첨가물(폴리솔베이트 기준치 초과), 세균 수 기준치 초과 통관문제가 발생
- 2015년 농산물 부문에서는 신선토마토의 잔류농약(플루킨코나졸 기준치 초과) 문제가 두드러짐. 기타 조제농산품으로는 곶감, 냉동시금치, 고춧가루, 건강식품 등이 세균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첨가물 기준치 문제로 통관거부

▌2015~2016년 제품별 한국식품 통관거부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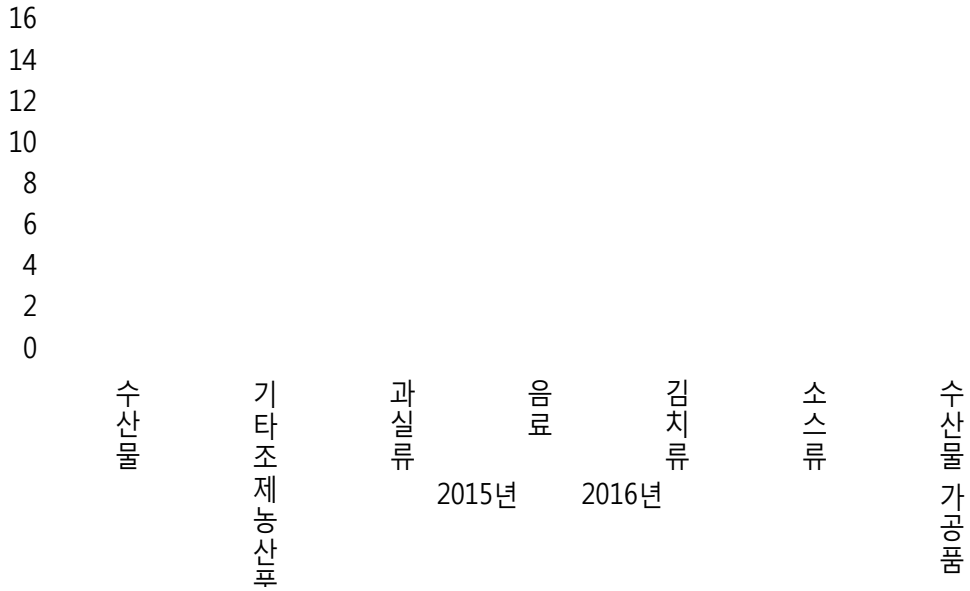

제품 종류	2015	2016
수산물	15	9
기타조제농산품	4	4
과실류	5	2
음료	2	2
김치류	0	1
소스류	0	1
수산물 가공품	7	1
유제품	1	0
합계	34건	20건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제2절

통관문제 사유분석

❑ 한국산 식품 가운데 가장 많은 통관거부 사유는 위생문제가 차지

❖ 2016년 통관 불합격 사유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위생부문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분부적합·잔류농약(5건)이 뒤를 이었음

- 위생의 경우 모든 사례가 대장균 양성 및 세균 수 기준치 초과문제였으며, 성분의 경우 솔빈산, 폴리솔베이트류, 잔류농약은 클로르페나필 등의 기준치 초과가 문제였음
- 라벨링/포장, 비위생적 제조 및 서류 미비 등의 문제는 2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음

▌사례별 분류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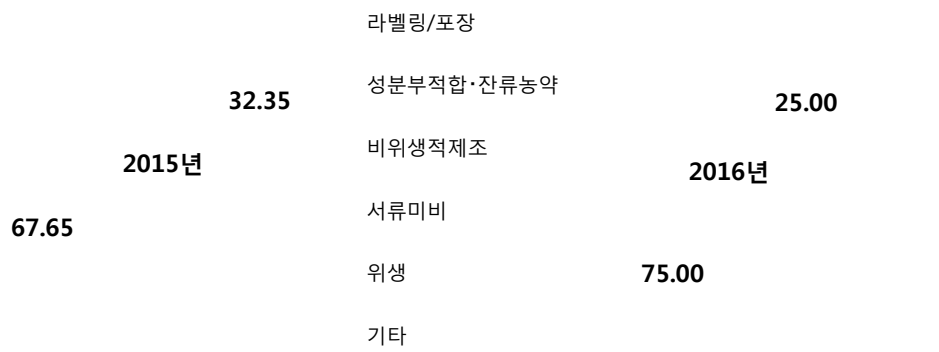

거부 사유	2015년	2016년
위생	23	15
성분부적합·잔류농약	11	5
라벨링/포장	–	–
비위생적 제조	–	–
서류미비	–	–
기타	–	–
합계	34	20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제3절

대응방안

❑ 2016년 식품위반사례 중 '세균수 초과' 등이 큰 비중 차지

❖ 2016년도에 발생한 한국산 식품의 대일 수출 시 식품위반사례는 총 20건으로 2015년에 발생한 34건에 비해 41.2% 감소하였으며, 위반건수 자체는 2014년부터 최근 3개년 간 매년 감소하고 있음

❖ 활어를 포함한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경우 위반사례는 10건으로 위반 원인의 대부분은 대장균 등 미생물 검출 초과로 인한 위반이었음

❖ 후생성고시 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에 의거하여 식품에 대해 대장균은 음성 반응이어야 하며, 생식용 선어개류 냉동식품은 세균수 1g당 100,000이하여야 함

❖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이외의 제품(새우튀김, 크로켓 등)은 세균수 1g당 300,000 이하여야 함(주요 품목별 기준치 '참고 자료' 기재)

❖ 향후 관련문제 발생방지를 위해서는 운송 시 신선도 유지 및 수산물 생산 작업장 내 위생환경 및 세균제어 등의 공정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 또한 대일 수출업체로 하여금 자가 품질 위탁 시험,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발신 및 업체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6년 잔류농약 위반사례 줄었으나, 전수검사 발동으로 여전히 주의필요

❖ 신선농산물 위반사례(참외 잔류농약 문제)는 2건으로 전년도 5건(토마토 잔류농약 문제)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향후 문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전 신선농산물의 일본 잔류농약 기준치에 대한 확인과 준수가 필요함

❖ 2016년 신선농산물의 잔류농약 위반사례는 모두 2건으로 참외에서 농약성분인 클로르페나필 성분이 연속 2회 검출되어 복수위반 시 검사명령을 이행하는 일본 감시지도계획에 의거하여 9월 28일부터 전수 검사명령이 발동됨

❖ 향후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이 업체에 전수검사 관련정보 통보, 수출업체 계약농가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현장실사 관리가 강화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일본의 전수검사 재제 및 해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재제요건 : 5% →(1회 위반 시) 30% →(2회 위반 시) 100%
- 해제요건은 2년간 무위반 또는 1년 이상 무위반과 동시에 300건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30%로 검사비율 완화, 이후 일정기간 위반 없을 경우 5% 모니터링 검사로 변경됨
- 모니터링 강화 단계에서 1년 동안, 60건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5% 수준으로 완화

❖ 일본은 신선농산물과 관련하여 국제기준 등을 참고로 758개 이상의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을 설정하고 있음(주요 품목별 기준치 참고 자료 참조)

❑ 가공식품 중 폴리솔베이트류 위반사례 증가, 주의필요

❖ 가공식품 중에서는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되는 폴리솔베이트, 솔빈산 기준치 위반사례 등이 있어 식품첨가물 규격준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특히 폴리솔베이트류는 최근 한국산 대일 수출품에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첨가제이며, 솔빈산은 일본 내에서 원재료로 고추장류를 사용하는 제품에 첨가제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성분임(주요 품목별 기준치 참고자료 참조)

❑ HACCP인증식품 통관절차 간소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발표로 HACCP인증 활성화 필요

❖ 일본에서는 HACCP인증식품 통관절차 간소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발표, 현재 운영 중인 수입식품사전확인제도 관련 등록신청 업체요건을 HACCP인증 취득 업체로 한정하여 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

❖ 해당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향후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식품업체와 HACCP 적용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지원을 통한 HACCP 적용확대 및 제도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식품 알레르기, GMO, 원산지표시 강화 대비해야

❖ 식품원산지 표기, 알레르기 표기, GMO표시는 일본 내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 상기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될 경우, 관계당국의 식품표시와 관련하여 교체기간, 세부표시 정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며 식품업체들도 원재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식품원료 관리 등을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임

❖ 자가 품질 위탁 시험, 검사기관 정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확인할 수 있음 15)

15) URL: http://www.mfds.go.kr/index.do?mid=1200

제4절

2016 통관문제사례 목록

위반발표일	품목명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비고
2016-02-03	살구(씨포함) 시럽	씨안화합물 31mg/kg 검출	폐기, 반송지시 (전량보관)	기타
2016-02-22	생식용 냉동 보일 게	세균수 초과검출 1.8×10^5 /g	폐기, 반송지시 (전량보관)	세균
2016-03-30	생식용 냉동 깐 새조개	대장균군 양성 세균수2.5×10^6/g	폐기, 반송지시 (전량보관)	세균
2016-04-07	생강 꿀절임	폴리솔리베이트류 0.055g/kg 검출	폐기, 반송지시 (전량보관)	첨가물
2016-04-19	조미료 CHICKEN SAUCE	솔빈산0.02g/kg검출 (원료 고추장에 사용)	폐기, 반송지시 (전량보관)	첨가물
2016-04-19	어묵제품	성분규격부적합 (대장균군 양성)	폐기, 반송지시 (전량보관)	세균
2016-05-06	생식용 냉동 보일 깐새조개	성분규격부적합 (세균수3.9×10^5/g)	폐기, 반송지시 (전량보관)	세균
2016-08-01	배추김치	장관출혈성 대장균 O103 양성	폐기, 반송지시 (조사중)	세균
2016-08-15	분말청량음료	성분규격부적합 (세균수8.3×10^3/g)	폐기, 반송지시 (전량보관)	세균
2016-08-24	신선참외	잔류농약 클로르페나 필0.02ppm 검출	폐기, 반송지시 (조사중)	잔류 농약

위반발표일	품목명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비고
2016-09-23	신선참외	잔류농약 클로르페나피르 0.02ppm 검출	전량 소비	잔류농약
2016-09-30	구운붕장어	대장균군 양성	폐기, 반송지시(전량보관)	세균
2016-10-24	냉동 피조개	대장균군 양성	폐기, 반송지시(전량보관)	세균
2016-11-09	깻잎김치	대장균군 양성	폐기, 반송지시(전량보관)	세균
2016-11-09	고들빼기 김치	대장균군 양성	폐기, 반송지시(전량보관)	세균
2016-11-09	냉동 보일 게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1.6×106/g)	폐기처분	세균
2016-11-09	냉동 홍게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6.0×105/g)	폐기, 반송지시(전량보관)	세균
2016-11-17	고려인삼차(분말)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6.4×105/g)	폐기, 반송지시(전량보관)	세균
2016-11-17	냉동 보일게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2.1×105/g)	폐기, 반송지시(전량보관)	세균
2016-11-17	눈다랑어 냉동선어	대장균군 양성	폐기, 반송지시(전량보관)	세균

제5절

참고자료

❑ 일본 대장균·세균수 기준치

❖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 제조 및 가공식품을 동결시킨 냉동제품 중 섭취 시 가열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100,000/g 이하 음성	음성	케이크

❖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제품

- 가열후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동결시킨 것 중 무가열섭취 냉동식품 이외의 것을 말함) 동결시키기 직전 공정에서 가열처리된 것을 말함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100,000/g 이하 음성	음성	햄버그, 면류, 소스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이외의 제품

-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상기 ②이외의 것을 말함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300,000/g 이하 음성	음성	새우튀김, 고로케 등

※ 밀가루를 주원료로 섭취 전 가열공정이 필요한 냉동빵 생지 등의 식품에 대해서는 섭취 전에 충분한 가열, 소성할 경우에 한해 E,coil음성의 성분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생식용 냉동선어개류

- 냉동식품 중 생선피레, 조갯살 등으로 처리한 선어류를 생식용으로 동결시킨 것을 말함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장염비브리오
	100,000/g 이하 음성	음성	100이하/MPN

※ 냉동식품 중 생선피레, 조갯살 등으로 처리한 선어류를 생식용으로 동결시킨 것을 말함

❑ 일본 주요 농약기준치

농약	기준치(ppm)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0.01
클로르피리포스	0.01
이미다클로프리드	0.01
클로르페나피르	0.01
지페노코나졸	1(고춧가루)

출처 : 재단법인 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http://m5.ws001.squarestart.ne.jp/zaidan/search.html)

- 이 외에 일본 내 잔류농약 사용기준은 재단법인 일본화학연구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16)]
- 농약 이외에 일본에서 식품 중 불검출되어야 하는 물질은 다음과 같음

식품중 불검출 되어야 하는 물질	
1. 2,4,5-T(살충/제초제)	9. Diethylstilbestrol(동물용의약품)
2. Azocyclotin* and Cyhexatin*(살충제)	10. Dimetridazole(동물용의약품)
3. Amitrol(살충/제초제)	11. Daminozide*(살충/생장조정제)
4. Captafol(살충/살균제)	12. Nitrofurans(동물용의약품)
5. Carbadox(동물용의약품)	13. Propham(제초제)
6. Coumaphos(동물용의약품)	14. Metronidazole(동물용의약품)
7. Chloramphenicol(동물용의약품)	15. Ronidazole(동물용의약품)

출처 : 농업과학기술원 '일본의 Positive List System과 대응방안'

16) URL : http://m5.ws001.squarestart.ne.jp/zaidan/search.html

3. 일본 가공식품 첨가물 기준치

첨가물	기준치
폴리솔베이트 80	0.02g
시안화합물	0.01 mg/liter
솔빈산	검출되어선 안됨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 이 외에 일본 식품첨가물 기준치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17]

4. 일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용기 규격

검사항목			기준치
일반규격	용출시험	중금속	1μg/mL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μg/mL 이하
	재질시험	납	100μg/g 이하
		카드뮴	100μg/g 이하
개별규격	용출시험	저마늄	0.1μg/mL 이하
		물	30μg/mL 이하
		4% 초산	30μg/mL 이하
		20% 에탄올	30μg/mL 이하
		헵탄	30μg/mL 이하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17) URL :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syokuten/qa_jigyosya.html

제 7 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제 1 절 수출애로 해소사례(aT지원)

No.	제목	일본 약사법에 따른 제품성분 통관 자문	지역	일본(도쿄)
1			품목	건강기능식품
업 체 애로사항	○ 바이어와의 상담을 끝내고 선적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제품 수출을 위한 제조 직전에 기능성식품 제품성분 및 함량 등이 일본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국내 각 수출지원 기관 등에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함			
aT 지원	○ (현지화 자문) 수입자 라벨표기사항 및 부적정 성분 규정에 대한 제품 사전검토 자문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공정, 함유량, 2차원료 명세서, 제품사양, 원산지표기 등 재확인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 등 자문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는 원료성분, 성분 사용제한 규정 등			
결 과	○ 수출업체가 직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대일 수출경쟁력 강화 및 원만한 수출 지원			

No.	제목	라벨 포장 표기, 포장패키지 디자인 변경으로 현지시장 공략 박차	지역	일본(오사카)
2			품목	기타가공
업 체 애로사항		○ 일본 세관 통관리스크 해소 및 현지시장 트랜드와 수입바이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필요		
aT 지원		○ (현지화 자문) – (통관) 수입자 라벨표기 사항 및 통관절차 및 준비사항 자문 – (기타) 해당품목 일본 시장조사(경쟁사 제품, 대형유통바이어 등) ○ (포장패키지 디자인) – 수입바이어와 대형유통업체 요구에 맞는 제품포장지 재개발로 바이어 신뢰도 제고 등 현지시장진입 지원 ○ (수입식품 검사비 지원) – 대장균, 아프라톡신 등 균류, 영양성분, 잔류농약분석 등 검사지원으로 통관 리스크 해소		
결 과		○ 현지화사업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적시에 식품수입시장 공략 ☞ 일본 대형밴더사 PB상품으로 확정되어 신규 판매 추진		

No.	제목	제품 상용화개발 특화컨설팅, 통관 검역 지원으로 유통업체 입점	지역	일본(도쿄)
3			품목	기타 가공식품
업 체 애로사항		○ 제품 일본수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제품 가공방법 및 현지시장 트렌드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해 시장진입에 애로		
aT 지원		○ (바이어 특화 컨설팅) 현지 맞춤상품 개발 – 전문가 참여 상품개발 공동회의, 제품 맛에 대한 일본 소비자 테스트 결과를 반영한 맛 조정과정을 거쳐 상품개발 지원 ☞ (기존) 신선식품 원물 수출 준비 → (개선) 술안주, 샐러드로 활용가능한 가공식품 개발 ○ (현지화 자문 및 포장패키지 디자인 연계 지원) – 제품 포장용기 패키지 신규 디자인개발 – 신규개발 패키지 디자인에 적합한 수입 라벨 표기자문, 성분 적정성 등 수출통관 컨설팅 ○ (aT 수출지원사업 연계 지원) – 하반기 유통업체 판촉 및 박람회 등 판로개척 지원		
결 과		○ ('16.8.) 제품 첫 수출선적식 – 초도 수출물량 컨테이너 1대 선적 및 500만불 수출계약 ○ ('16.11.)일본 대형유통업체 內 100여개 점포 입점 및 납품		

<table>
<tr><td>No.
4</td><td>제목</td><td>일본수입식품 라벨표기 등 통관자문 및 포장패키지 현지화 디자인</td><td>지역</td><td>일본(도쿄)</td></tr>
<tr><td colspan="3"></td><td>품목</td><td>차류, 죽</td></tr>
<tr><td colspan="2">업 체
애로사항</td><td colspan="3">○ 유자차 원재료 및 완성품 형태에 따라 HS코드 및 관세율 상이
○ 일본 수입식품 검역기준보다 엄격한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제품표기 규정 숙지 및 관련서류 준비
○ 일본 소비자 취향에 적합한 포장표기 디자인</td></tr>
<tr><td colspan="2">aT 지원</td><td colspan="3">○ (현지화 자문)
– (관세) 유자차 원재료 및 완성품 형태에 따른 관세율 기준 자문에 따른 관세절감 (23.8% → 16.8%)
– (통관) 일본 수입식품 법령, 소비자 의견, 유통업체 기준에 부합하는 라벨표기법 등 통관 자문
*알레르기 성분, 제조공장 동일 라인 제조품 정보 등 기재
○ (포장패키지 현지화) 일본 현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중량, 색상, 판매법, 포장 등의 의견을 반영한 포장패키지 디자인 지원

닭죽 포장패키지 개선 | 호박죽 포장패키지 개선
○ (현지 검사비 지원) 솔빈산, 시안화합물 등 방부제 및 식품첨가물 수입식품 검사 지원으로 원활한 통관 지원</td></tr>
<tr><td colspan="2">결 과</td><td colspan="3">○ ('16.11.) 코스트코 주관 한국 판촉전 입점 성과
○ 130여곳 액상차 매장 130여개소에서 500여개소로 확대</td></tr>
</table>

제2절

수출애로 및 건의사항

No.	제목		해당국가	일본
1		한국산 된장, 고추장류의 일본 된장 표준 규격으로 적용	관련품목	된장, 고추장
			유 형	제도

애로·건의사항

○ 한국산 된장, 고추장류의 소르빈산 등 첨가물의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대일 수출 시 위반 사례 발생
*일본 된장류의 소르빈산 사용기준치는 0.1g/kg

○ 한국산 된장은 일본의 된장으로 불인정
- 된장류의 식품규격을 관장하는 日 농림수산성의 품질표시기준에 의하면 한국산 된장은 된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소르빈산 사용 불가
- 일본측은 한국산 된장에 대해 일본 된장과는 다른 원료와 공정을 사용한다는 사유로 동일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본 내 첨가물 기준치 적용에서 제외된 상태

○ 한국산 된장·고추장 및 해당 조미료 활용 제품(깻잎무침 등) 소르빈산 위반으로 수출 애로
*소르빈산(방부제) 위반사례 : ('11~16년) 10건

- 과거 한국산 고추장에서 소르빈산이 검출되어 언론보도되면서 해당제품이 일본 대형유통매장(이온) 점포에서 수거되고, 수입업체는 타격을 입은 바 있음

○ 한국산 된장, 고추장류의 일본 된장으로의 분류 검토 필요
- 국내 제조수출업체 문의 결과, 대일 수출용 된장, 고추장이 일본 농림수산성의 규격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첨가물 기준치 신규 설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으로 가능한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일본의 기존 된장류 범위 내에서 첨가물 기준치를 적용받도록 조치 필요.
- 일본산 된장을 포함한 한국산 된장, 고추장은 이미 CODEX에 등록되어 국제적 규격이 설정된 품목으로 동일 규격 카테고리에서 논의 필요.
- 한식의 대표 조미료인 된장, 고추장의 일본 된장과 동일한 기준치 설정을 통한 된장, 고추장 및 해당 조미료 사용 제품의 원활한 수출확대 유도

제3절

aT 현지화 지원사업 안내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및 현지 바이어(유통업체)

- 공정거래법 제14조에 의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원 제외

❖ 지원 시기 : 연중 수시

❖ 서비스 대상국 18개국

- (동아시아)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일본
- (동남아) 동남아(베트남, 인니, 말련, 태국, 인도 등)
- (기타) 중동(UAE), 미주(미국, 캐나다, 브라질), EU(프랑스, 독일 등)

❖ 지원 내용

- 수입국 현지 전문기관이 비관세장벽 자문, 라벨링, 상표권 출원 등 지원

<table>
<tr><th>지원 사업</th><th>지원비율</th><th>지원한도</th><th>세부 지원내용</th></tr>
<tr><td>비관세
장벽해소
자문</td><td>전액</td><td>최대 10회
&
10백만원</td><td>○수입국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자문 지원
<table>
<tr><th>분야</th><th>지원(자문) 내용</th></tr>
<tr><td>법률</td><td>• 계약서 작성, 상표권 및 특허제도 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td></tr>
<tr><td>통관</td><td>• 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
• 수출가능여부, 제품 사전 검토 등</td></tr>
<tr><td>관세</td><td>• 관세율(일반 관세 및 FTA협정관세)
• HS코드 분류 등</td></tr>
<tr><td>SPS</td><td>• 식품관련 법령 및 위생·검역 기준,
• 식품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td></tr>
<tr><td>기타</td><td>• 기타 현지 비즈니스 지원정보 등</td></tr>
</table>
※ 자문 서비스 가능 분야(내용)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td></tr>
<tr><td>라벨링*
지원</td><td>90%</td><td>10백만원</td><td>○ 각국 식품법령에 부합하는 라벨 디자인·제작
*사전 샘플 검역·검사 지원</td></tr>
<tr><td>상표권*
지원</td><td>90%</td><td>10백만원</td><td>○ 상표권 유사상표 조사 및 출원지원
– 유사상표 조사 후 현지 상표국 출원 지원</td></tr>
</table>

※ 수산의 경우는 70% 지원

❖ 신청방법

- On-line 신청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
  -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무역통계제공정보 동의서 등

2016년 일본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보고서 기획 및 작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발 행 일 201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 행 처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61-931-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수출정보부
02-6300-1679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

2016년
일본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